



# 목 차

I. 사회서비스의 개요	1
II. 이용자 접수(신청/구비서류)	2
III. 국민행복카드 발급안내	4
IV. 2023년 울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공통 준수사항	6
V. 서비스 신청 시 필수 유의사항	43
첨부1_사업별 증빙서류 목록	45
첨부2_욕구판단 검사가능 기관	47
첨부3_사랑나눔 안마서비스 질병분류 코드	51
첨부4_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 질병분류 코드	52
첨부5_중위소득 기준표	54
첨부6_출생연도 기준표	56
첨부7_영유아 건강검진 시기	57
첨부8_다빈도 질문 및 답변	58



# I. 2023년 울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 1. 사업목적

- 1)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 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 2)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서비스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2. 사업개요

- 1)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2) 의의
  -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 3) 수행방식
  -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
  -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하고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 사업 기획·운영 상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
  - 지역사회서비스의 개발 및 심사, 관리, 점검 기능을 지자체에 부여하여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 촉진 및 재정 효율성 제고

## 3. 기존 사회서비스와의 차이점

구분	공급기관 지원방식	수요자 지원방식
대상	수급자 등 저소득층	서민·중산층까지 확대(능동적 구매자)
서비스비용	전액 국가 지원	일부 본인부담
서비스시간	공급기관 재량	대상자 욕구별 표준화
공급기관	단일 기관 독점	다수 기관 경쟁
특징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서비스 제공	공급자간 경쟁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II. 이용자 접수(신청 / 구비서류)

### 1. 서비스 신청

- 1) 신청기간 : 2023. 9. 4.(월) ~ 9. 12.(화)
- 2) 신청조건 : 소득, 연령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연령은 출생연도 기준(연령이 속한 출생연도 모두 인정)

### 2. 신청권자

- 1)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법정후견인)
  -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 2)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반드시 보호이용자의 보호 동의 필요)
  -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 3. 제출서류

- (공통)[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공통)[제7호서식]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공통)[제5-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만14세미만, 75세 이상) [제5호 서식]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신청서
- (만14세미만) [제6호 서식]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만19세 이상 읍·면·동에서 카드발급 시) [제5-1호 서식]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이용자가 직접 카드사 영업점 방문시에는 [제5-1호 서식] 미작성
- (해당 시) 우선순위 관련 서류

### 4. 이용자 선정 결과 알림

- 1)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통지서와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 우편배송
  - [제2호 서식] 사회보장급여(결정, 변경, 정지, 중지, 상실)통지서
  - [제10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 안내문

### 5. 이용자 자격변동(전·출입)

- 이용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 시 별도의 처리 없이 자동 대상제외 완료 처리  
※ 전입지 시·군·구 담당자가 전출지 시·군·구에 부적합 처리 요청 불필요
- 다른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기존 지역에서 취득한 이용자 자격은 상실되고 전입지에서 재심사·선정 되어야 함.  
※ 재신청 가능여부 및 잔여기간 혹은 전체 서비스 제공여부는 예산 여건, 신청자의 서비스 이용내역 등을 검토하여 해당 시·군·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 기존 지역에서 생성된 바우처는 전출입 신고일 기준 해당월까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결제가 불가능함에 유의

## 6. 이용자 소득조사

### ① 가구원 수 산정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서비스이용자를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아동의 경우 형제, 자매 포함)
- ※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배우자(사실혼 관계포함) 또는 부모·형제(특히 아동의 경우)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 서비스이용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직장 또는 지역)인 경우 서비스이용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료만 가구원으로 산정하고 소득조사 실시
- ※ 단,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이나,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수에서 제외

(예시) 서비스를 신청한 가구의 주민등록표에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4인이나 건강보험증에 5인이 등록된 경우에도 해당 가구원 수는 4인으로 산정(주민등록표 기준)

- 서비스이용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행복이음을 통한 가족관계등록원부 조회가 불가하나, 지자체 담당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가능)

(예시1) 서비스를 신청한 아동(주민등록표상 2인 가구 : 어머니, 아동)이 따로 사는 아버지(4인가구)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버지의 소득증명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가구원수는 6인으로 산정

(예시2) 서비스를 신청한 아동(주민등록표상 2인 : 어머니,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여 따로사는 경우 아동이 어머니의 건강보험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따로 사는 아버지는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으로 볼 수 없음.

(예시3) 서비스를 신청한 노인(주민등록표상 2인 가구 : 노인, 아들1)이 따로 사는 아들2 (4인 가구, 사돈 포함)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들1, 아들2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확인하고 가구원수는 6인으로 산정

### ② 소득 조사

- (원칙) 행복이음을 통해 조회된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 (예외)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신청자가 건강보험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서비스 대상 가구의 건강보험료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 등을 토대로 신청월 직전 12개월 평균하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산정
  - ※ 필요시 신청자가 건강보험료 관련 소명자료 제출
- (조사생략)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소득조사를 통한 행정 비효율을 막기위해 소득조사 미실시(행복이음에서 확인)
- (해외체류) 해외체류로 건강보험 부과 중지된 경우 월급명세서로 산정하고, 월급명세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중지 직전 12개월 평균하여 산정
- (직장가입자 휴직)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자의 소득을 0원으로 처리
  - ※ 3개월 미만 휴직자의 소득을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산정
- (보험료 합산)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이거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해당 가구의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확정

- (맞벌이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B" 낮은 건강보험료×0.5

- ③ 기타 상기관 관련 조사 및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제3항·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하며, 이용자는 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소득 관련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군·구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자격변경으로 이동)
- ④ 바우처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재판정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재판정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조사 실시

### III. 국민행복카드 발급안내

#### 1. 국민행복카드란?

- 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이 가능한 카드
- 발급대상 :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
  - 현재 바우처 이용자가 아니어도 국민 누구나 카드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발급이 가능하며 카드 기발급자는 향후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
  -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에도 금융카드(신용, 체크)로 계속 사용 가능
- 기존 바우처 카드가 있는 경우, 신규발급 불필요
  - 신규 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기존 바우처카드로 바우처포인트 생성
  - 주민센터 담당자는 서비스 신청자에게 국민행복카드 보유 여부를 질문하고, 기 보유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이 불필요함을 안내
  - 금융형카드(신용·체크)발급은 적용연령 출생연도 기준표와 상관없이 실 생년월일에 따른 만 나이 적용
  - 국민행복카드는 반드시 서비스 대상자 명의로 발급하여야 함.

#### ※기억하세요!

• 만14세미만, 만75세 이상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제5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제6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만14세미만 해당)

• 만14세-19세 미만 : 체크카드(읍·면·동에서 신청불가)  
 [제4호]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이용자용)

• 만19세이상 : 본인선택(금융, 체크)  
 [제4호]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이용자용)  
 [제5-1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읍면동에서 신청시)

## 2.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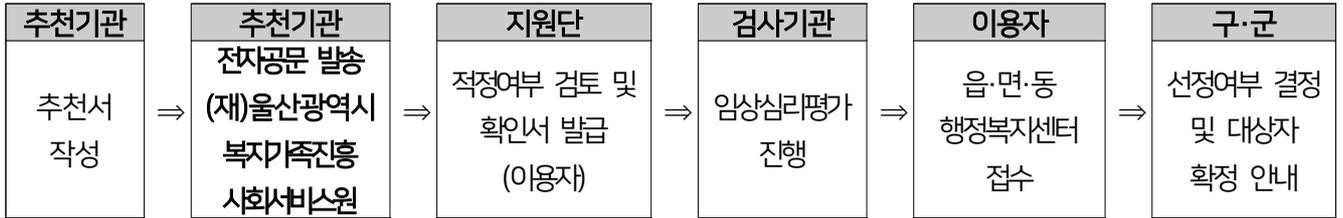
연령	발급가능 카드종류	발급방법 및 작성서류
만14세 미만 만 75세 이상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동에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li> </ul>
	작성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신청서</li> <li>- [제6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li> </ul>
	재발급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전용카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서류 작성(신규신청시와 동일)</li> </ul>
만14세~19세 미만	체크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여 국민 행복카드(체크카드) 신청</li> <li>※ 읍·면·동에서 신청불가</li> <li>※ 카드사별로 신청가능자, 구비서류 필요여부 등이 상이하므로 영업점 방문 전 발급 기준 문의 필요</li> </ul>
	작성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호]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이용자용)</li> </ul>
	재발급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li> <li>*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은 불가</li> </ul>
만19세 이상	체크카드, 신용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카드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 가능</li> <li>②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가능</li> <li>※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를 작성 및 카드 발급을 위한 상담전화에 응대하여야 함을 반드시 안내</li> </ul>
	작성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호]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이용자용)</li> <li>- [제5-1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li> <li>※ 이용자가 직접 카드사 영업점 방문 시에는 [제5-1호] 서식 미작성</li> </ul>
	재발급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li> <li>※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은 불가</li> </ul>

## 3. 문의사항 연락처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243-4800
전자바우처 시스템 관련 문의	사회서비스정보원 사회서비스상담센터 (예탁금, 본인부담금, 이용자 카드 배송 및 수령여부, 단말기, 전자바우처시스템, 바우처결제관련 등) ☎ 1566-3232(단축4번)
행복이음 관련 문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 콜센터 (대상자 신청·선정·판정, 이용자 카드 신청·재발급, 제공기관 정보입력 등) ☎ 1566-3232(단축2번)
결제단말기(SK)	☎ 1599-3813
결제단말기(LG)	☎ 1899-0566
보건복지콜센터	☎ 129



2. 접수방법 : 매월 20일~21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 휴일일 경우, 순연하여 2일 접수)
3. 접수절차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만 해당



### ◆ 추가확보시설 조건

1. 추가확보시설은 등록 서류를 구·군에 제출 후 승인된 시설만 활용가능(사전신고 필수)
  - ※ 추가확보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실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인정 불가
2. 등록 시설 기준(33㎡)을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배상책임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
  - ※ 협약서는 권한 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경로당의 경우 지자체 소유는 구·군청장, 마을소유 또는 공동주택소유는 각 대표자와 협약)
  - ※ 협약기간은 최대 2년 이후 재협약 시 관할 구청에 추가확보시설 재신청 필수
  - ※ 지정 형태의 운영 방지를 위해 기존의 체육관, 학원, 교습소 등의 장소 계약을 통해 일부 시간대와 특정 요일에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은 불가
3. 추가확보시설의 지정 형태 운영 사례 방지를 위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제공기관 시설 기준 확보 등 자체적으로 등록이 가능한 시설은 별도의 제공기관으로 등록
4.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
  - ※ 단,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허용/ 사회복지거주시설 및 거주시설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 불가
5. 추가확보시설 변경 신청 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제16호 서식) 활용

### ◆ 안전관리기준 준수

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
2. 기관방문형
  - ① 이용자 및 제공인력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 ② 연1회 이상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사용 시설물은 월1회 이상 안전여부 점검
  - ③ 연1회 이상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④ 연2회 이상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 실시
3. 재가방문형
  - ① 제공인력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 ② 연2회 이상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제공인력 보건 및 안전교육 실시
4. 집단활동형
  - ① 제공인력 응급처치교육 연4시간 이상 의무수료
  - ② 표준계약서 안전사고에 대한 기준 제시
  - ③ 서비스 이용자 여행자보험가입 필수
  - ④ 서비스 이용자 안전교육 대장, 비상연락망, 보호자 동의서
  - ⑤ 체험시설 안전확인 대장
  - ⑥ 여행사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차량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운전기사 재직증명서 구비
  - ※ 제공기관장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위험에 대비하여 사전·사후조치를 하여야 하며, 등록기관(지사지부가맹점 등 포함), 협력기관, 제공인력 등의 의무 이행 행태, 부정행위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함.

# 1 [020108]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관찰·평가를 통해 환경적·신체적 원인을 분석하고 발달 지연 영역(발달기초, 언어발달, 초기인지, 정서·사회성 등)을 촉진할 수 있는 통합적 조기중재 서비스를 설계하여 제공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 중위소득 160% 이하</li> <li>○ 연령 : 만6세(2017년생) 이하</li> <li>○ 가구특성</li> </ul> <p>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b>발달평가결과 및 종합판정 결과란에 추적검사요망, 심화평가권고, 지속관리필요, 정밀평가필요</b> 등급을 받은 영유아 또는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모두 포함) 10백분위(%) 이내인 영유아 (신청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행복이음에서 확인)</li> <li>※ 여성가족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li> <li>○ 우선순위</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유아건강검진 종합판정 결과 정밀평가필요, 심화검사평가권고, 추적검사요망, 지속관리필요 등급 또는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모두 포함) 10백분위(%)이내인 영유아로 <b>심화검사 결과 발달지연, 발달경계 판정 영유아(영유아건강검진결과지와 심화검사결과지 모두 필요)</b></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순위별 세부 순위는 영유아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낮은순)</li> </ul>																				
③ 제공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 교사(이하 “전문상담교사”)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유치원정교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이하 “임상심리사”)</li> <li>2.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 등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1,920시간) 이상</li> <li>② 학사학위 취득 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960시간) 이상</li> <li>③ 석사학위 취득 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480시간) 이상</li> </ol> </li> </ol> <p>※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간자격증 취득 제공인력은 2023년에 한해 자격기준을 1년 연장하고 신규 제공인력은 민간자격기준으로 등록 불가</p>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가격 : 160천원/월</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e1f2;"> <th>구분</th> <th>1등급</th> <th>2등급</th> <th>3등급</th> <th>4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 <td>중위소득 120%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d> <td>중위소득 120%초과 ~140%이하</td> <td>중위소득 140%초과 ~160%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144천원</td> <td>128천원</td> <td>112천원</td> <td>96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16천원</td> <td>32천원</td> <td>48천원</td> <td>64천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규제 완화사업 : 기준가격 대비 20%상향, 192천원까지 가능(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li> <li>○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li> </ul>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 120%초과 ~140%이하	중위소득 140%초과 ~160%이하	정부지원금	144천원	128천원	112천원	96천원	본인부담금	16천원	32천원	48천원	64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 120%초과 ~140%이하	중위소득 140%초과 ~160%이하																	
정부지원금	144천원	128천원	112천원	96천원																	
본인부담금	16천원	32천원	48천원	64천원																	

항목	내용								
<p>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p>	<p>○ 서비스 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352 331 1358 790"> <thead> <tr> <th data-bbox="352 331 1222 383">서비스 내용</th> <th data-bbox="1222 331 1358 383">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52 383 1222 685">           1. 기본서비스            ① 발달기초영역 : 기본적 대근육, 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② 언어발달영역 : 의사소통 기능·기술 및 어휘발달 촉진            ③ 초기인지영역 : 감각운동에 기초한 인지발달 촉진            ④ 정서·사회성영역 : 기본적인 정서표현 및 가족·타인과의 사회성 활동 촉진  <b>※ 집단규모 1:1 서비스 제공 시, 주1회 (회당 40분/부모상담 10분)</b>  <b>※ 집단규모 1:2 이상 제공 시, 주2회 (회당 60분)</b> </td> <td data-bbox="1222 383 1358 685">           주1회            회당 50분            (월4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td> </tr> <tr> <td data-bbox="352 685 1222 736">2. 부모상담 및 교육</td> <td data-bbox="1222 685 1358 736">월1회</td> </tr> <tr> <td data-bbox="352 736 1222 790">3. 서비스 결과 월별 보고서 작성 및 배부</td> <td data-bbox="1222 736 1358 790">월1회</td> </tr> </tbody> </table> <p>○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 이용자 대상 평가·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사전검사 의무실시)</li> <li>2단계 :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li> <li>② 매월 부모상담 및 교육</li> <li>③ 매월 서비스 결과 월별보고서 작성 및 배부</li> <li>④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li> </ol> </li> <li>3단계 : 서비스 종료 (사후검사 의무실시)</li> </ol> <p><b>※ 필요시 장애아동 재활치료, 교과부 특수교육 등 기타서비스 연계 의무화</b>  <b>※ 서비스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K-CDI, CBCL, SELSI 중 1개 이상) 의무실시</b>  <b>※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b></p>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1. 기본서비스 ① 발달기초영역 : 기본적 대근육, 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② 언어발달영역 : 의사소통 기능·기술 및 어휘발달 촉진 ③ 초기인지영역 : 감각운동에 기초한 인지발달 촉진 ④ 정서·사회성영역 : 기본적인 정서표현 및 가족·타인과의 사회성 활동 촉진 <b>※ 집단규모 1:1 서비스 제공 시, 주1회 (회당 40분/부모상담 10분)</b> <b>※ 집단규모 1:2 이상 제공 시, 주2회 (회당 60분)</b>	주1회 회당 50분 (월4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부모상담 및 교육	월1회	3. 서비스 결과 월별 보고서 작성 및 배부	월1회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1. 기본서비스 ① 발달기초영역 : 기본적 대근육, 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② 언어발달영역 : 의사소통 기능·기술 및 어휘발달 촉진 ③ 초기인지영역 : 감각운동에 기초한 인지발달 촉진 ④ 정서·사회성영역 : 기본적인 정서표현 및 가족·타인과의 사회성 활동 촉진 <b>※ 집단규모 1:1 서비스 제공 시, 주1회 (회당 40분/부모상담 10분)</b> <b>※ 집단규모 1:2 이상 제공 시, 주2회 (회당 60분)</b>	주1회 회당 50분 (월4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부모상담 및 교육	월1회								
3. 서비스 결과 월별 보고서 작성 및 배부	월1회								
<p>⑥ 집단규모</p>	<p>○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3인 이내 소그룹으로 운영 (1:1~1:3)</p> <p><b>※ 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 이용(1:1)을 원칙으로 함</b></p> <p><b>※ 단, 집단 서비스가 1:1서비스보다 효과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인력 소견서, 보호자 동의서를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소집단 프로그램(1:2~1:3)허용</b></p>								
<p>⑦ 서비스지역</p>	<p>○ 전 구·군</p>								
<p>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p>	<p>○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p>								
<p>⑨ 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추적검사요망, 심화평가권고, 지속관리필요, 정밀평가필요 등급)  <b>※종합판정이 ‘양호’ 또는 ‘주의’일 경우 신청 불가</b></li> <li>2. (해당시) 심화검사결과지</li> </ol>								

## 2 [010108]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② 서비스 대상	<p>○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p> <p>○ 연 령 : 만 18세(2005년생) 이하 (아동·청소년. 단, 만18세 이상 일지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서비스 대상으로 인정)</p> <p>○ 선정기준</p> <p>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li> <li>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li> <li>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li> <li>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li> <li>⑤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li> </ol> <p>2. 욕구판단은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단서(혹은 소견서)는 각 병원,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1급,2급), 전문상담사(교사)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가 첨부된 것이어야 함.(진단서(혹은 소견서)의 요약서도 첨부되어야 함)</li> <li>-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각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CBCL, K-ARS, RCMA, -PRC, -CYP, PRES/ 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하며,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WISC-V (WPPSI, WAIS포함) 지능검사, K-ABC2 중 하나를 필수로 활용하여야 함.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li> </ul> <p>※ 의사가 임상심리평가를 진행하고 소견서를 작성할 경우, 소견서 요약본은 불필요</p> <p>※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이음에서 확인)</p> <p>※ 폭행, 학대, 방임, 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는 수시접수 가능(학교교사, Wee클래스·센터·스쿨,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내 사회복지기관, 희망복지지원단,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추천서 첨부)</p> <p>※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는 해당 제공기관의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등록되어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인력만 가능함</p> <p>※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시 진행하였던 이용자의 심리검사지 원본 및 검사결과 사본은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며, 허위검사 적발 시 이용자격 중지</p> <p>○ 우선순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아정신과, 정신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아동(진료확인서 제출)</li> </ol>

항목	내용																				
<p>③ 제공인력</p> <p>※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준수</p>	<p>○ 제공기관 자격기준</p> <p>-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p> <p>○ 제공기관장(슈퍼바이저) 자격기준</p> <p>- 제공기관은 제공기관의 인력 중 슈퍼바이저를 1인 이상 지정하도록 하며, 제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겸직할 수 있음</p> <p>1. 슈퍼바이저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함</p> <p>-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놀이치료학, 미술치료학, 음악치료학 등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 학사학위 이상인면서 학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7년(13,440시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이상인면서 석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5년(9,600시간) 이상인 자</p> <p>※ 신규기관으로 등록하는 기관에 언어재활사가 슈퍼바이저로 등록할 경우, 해당 기관은 언어프로그램만 진행 가능</p> <p>2. 슈퍼바이저는 아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p> <p>- 소속 기관의 사례회의를 주재하고 논의된 사례에 대해 일정 수준의 슈퍼비전을 제공함</p> <p>-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소속 기관의 치료사들과 관심 사례를 논의하고 논의 과정을 주도함</p>																				
<p>③ 제공인력</p>	<p>○ 제공인력 자격기준</p> <p>1.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 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보건법” 제7조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이하 “임상심리사”)</p> <p>2.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심리운동 포함) 등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960시간) 이상인 자, 학사학위 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1,920시간) 이상인 자</p> <p>※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간자격증 취득 제공인력은 2023년에 한해 자격기준을 1년 연장하고 신규 제공인력은 민간자격기준으로 등록 불가</p>																				
<p>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p>	<p>○ 서비스 가격 : 180천원/월</p> <table border="1" data-bbox="331 1093 1471 1328"> <thead> <tr> <th>구분</th> <th>1등급</th> <th>2등급</th> <th>3등급</th> <th>4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 <td>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d> <td>중위소득 120% 초과 ~140%이하</td> <td>중위소득 140% 초과 ~160%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162천원</td> <td>144천원</td> <td>126천원</td> <td>108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18천원</td> <td>36천원</td> <td>54천원</td> <td>72천원</td> </tr> </tbody> </table> <p>※ 가격규제 완화사업 : 기준가격 대비 20%상향, 216천원까지 가능(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p> <p>○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1회</p> <p>※ 재판정의 경우 종료시점과 관계없이 정규모집 시 신청 가능</p> <p>※ 서비스 종료 후 2년 이내 신청할 경우 가능</p> <p>※ 중도에 그만 둘 경우 신청 불가</p>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 120% 초과 ~140%이하	중위소득 140% 초과 ~160%이하	정부지원금	162천원	144천원	126천원	108천원	본인부담금	18천원	36천원	54천원	72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 120% 초과 ~140%이하	중위소득 140% 초과 ~160%이하																	
정부지원금	162천원	144천원	126천원	108천원																	
본인부담금	18천원	36천원	54천원	72천원																	
<p>⑤ 제출서류</p>	<p>○ 신규신청</p> <p>1. 진단서(혹은 소견서) (6개월)      2. 소견서 요약본(병원에서 의사가 실시할 경우 생략 가능)</p> <p>3. 전문가보고 검사 결과지 (1년)      4. 부모보고 검사 결과지(6개월)</p> <p>○ 재신청</p> <p>1. 진단서(혹은 소견서) (6개월)      2. 소견서 요약본(병원에서 의사가 실시할 경우 생략 가능)</p> <p>3. 전문가보고 검사 결과지 (2년)      4. 부모보고 검사 결과지(6개월)</p> <p>5. 사전,사후검사지(동일한 도구 활용) 및 결과보고서 (사후검사지와 부모보고검사가 동일할 수 있음) (ex. MMPI, K-CBCL, K-ARS, RCMAS, K-PRC, K-CYP, PRES, SELSI)</p> <p>6. 서비스 종결 평가서</p> <p>※ (공통) 전문가보고와 부모보고 검사자 동일</p> <p>- 재판정일 경우 전문가보고검사의 유효기간이 2년이므로, 기존에 했던 검사 결과지 사본을 제출 가능하며, 부모보고검사만 진행 필요.</p> <p>- 부모보고검사는 전문가보고검사를 진행했던 검사자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이 검사가능 기관일 경우는 기관에서 가능</p>																				

항목	내용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8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20%;">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1. 기본서비스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li> </ul>           ① 언어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li> <li>- 효과: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 등을 언어로 적절히 표현하며 또래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심리, 정서적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짐</li> </ul>           ② 놀이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생각, 감정,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극복과 잠재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임</li> <li>- 효과: 아동·청소년은 놀이를 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불안감이나 방어적 태도가 줄어들고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성취감을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과 다양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 해결에 효과를 가짐</li> </ul>           ③ 미술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시각적인 미술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예술적인 자기표현 과정이 아동·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시키고 창조적 기능을 자극하여 자기 치유능력 증진에 도움을 제공함</li> <li>- 효과: 미술표현으로 심리적 불안정과 손상된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시기의 자기표현 및 자아개념, 대인관계 기술을 발달시키며 문제행동 감소와 원만한 상호소통 및 적응에 긍정적 효과를 보임</li> </ul>           ④ 음악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문제성 있는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내적/외적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치료계획 수립과 음악활동을 실행함</li> <li>- 효과: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감각 및 인지,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아동·청소년의 긍정적인 정서발달과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성장을 도움</li> </ul>           ⑤ 심리상담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아동·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특성을 학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상담을 통해 사고, 정서, 행동 측면의 문제를 스스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게 함</li> <li>- 효과: 특히 청소년들은 다른 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말로써 표현하므로 직접적인 문제해결의 효과를 꾀할 수 있으며,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의 심리·정서적인 안정과 정신건강에 효과를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상담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의 심리치료적 개입을 포함하며 치료적 필요에 따라 회기별 상담에 참여하는 가족의 범위는 변동될 수 있음.</li> </ul> </li> </ul>           ⑥ 부모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면담) 서비스</li> <li>* 부모상담의 유형은 아래의 3가지 방식 중 1가지를 택하여 진행할 수 있음</li> </ul>           ㉠ 기본프로그램 제공 후 10분 이상의 부모상담을 실시 함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아동과 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부모상담만으로 진행할 수 있음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text-align: center;">           주1회            회당 50분            (월4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td> </tr> </tbody> </table>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기본서비스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li> </ul> ① 언어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li> <li>- 효과: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 등을 언어로 적절히 표현하며 또래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심리, 정서적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짐</li> </ul> ② 놀이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생각, 감정,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극복과 잠재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임</li> <li>- 효과: 아동·청소년은 놀이를 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불안감이나 방어적 태도가 줄어들고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성취감을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과 다양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 해결에 효과를 가짐</li> </ul> ③ 미술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시각적인 미술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예술적인 자기표현 과정이 아동·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시키고 창조적 기능을 자극하여 자기 치유능력 증진에 도움을 제공함</li> <li>- 효과: 미술표현으로 심리적 불안정과 손상된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시기의 자기표현 및 자아개념, 대인관계 기술을 발달시키며 문제행동 감소와 원만한 상호소통 및 적응에 긍정적 효과를 보임</li> </ul> ④ 음악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문제성 있는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내적/외적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치료계획 수립과 음악활동을 실행함</li> <li>- 효과: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감각 및 인지,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아동·청소년의 긍정적인 정서발달과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성장을 도움</li> </ul> ⑤ 심리상담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아동·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특성을 학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상담을 통해 사고, 정서, 행동 측면의 문제를 스스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게 함</li> <li>- 효과: 특히 청소년들은 다른 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말로써 표현하므로 직접적인 문제해결의 효과를 꾀할 수 있으며,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의 심리·정서적인 안정과 정신건강에 효과를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상담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의 심리치료적 개입을 포함하며 치료적 필요에 따라 회기별 상담에 참여하는 가족의 범위는 변동될 수 있음.</li> </ul> </li> </ul> ⑥ 부모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면담) 서비스</li> <li>* 부모상담의 유형은 아래의 3가지 방식 중 1가지를 택하여 진행할 수 있음</li> </ul> ㉠ 기본프로그램 제공 후 10분 이상의 부모상담을 실시 함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아동과 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부모상담만으로 진행할 수 있음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기본서비스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li> </ul> ① 언어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li> <li>- 효과: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 등을 언어로 적절히 표현하며 또래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심리, 정서적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짐</li> </ul> ② 놀이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생각, 감정,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극복과 잠재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임</li> <li>- 효과: 아동·청소년은 놀이를 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불안감이나 방어적 태도가 줄어들고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성취감을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과 다양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 해결에 효과를 가짐</li> </ul> ③ 미술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시각적인 미술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예술적인 자기표현 과정이 아동·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시키고 창조적 기능을 자극하여 자기 치유능력 증진에 도움을 제공함</li> <li>- 효과: 미술표현으로 심리적 불안정과 손상된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시기의 자기표현 및 자아개념, 대인관계 기술을 발달시키며 문제행동 감소와 원만한 상호소통 및 적응에 긍정적 효과를 보임</li> </ul> ④ 음악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문제성 있는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내적/외적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치료계획 수립과 음악활동을 실행함</li> <li>- 효과: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감각 및 인지,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아동·청소년의 긍정적인 정서발달과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성장을 도움</li> </ul> ⑤ 심리상담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아동·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특성을 학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상담을 통해 사고, 정서, 행동 측면의 문제를 스스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게 함</li> <li>- 효과: 특히 청소년들은 다른 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말로써 표현하므로 직접적인 문제해결의 효과를 꾀할 수 있으며,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의 심리·정서적인 안정과 정신건강에 효과를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상담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의 심리치료적 개입을 포함하며 치료적 필요에 따라 회기별 상담에 참여하는 가족의 범위는 변동될 수 있음.</li> </ul> </li> </ul> ⑥ 부모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면담) 서비스</li> <li>* 부모상담의 유형은 아래의 3가지 방식 중 1가지를 택하여 진행할 수 있음</li> </ul> ㉠ 기본프로그램 제공 후 10분 이상의 부모상담을 실시 함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아동과 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부모상담만으로 진행할 수 있음	주1회 회당 50분 (월4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항목	내용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 심리검사(사전·사후) : 심리평가도구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심리·행동 문제를 진단하고 변화를 측정함</p> <p>* 심리검사는 기본서비스 시작시 기본 프로그램 영역별 검사도구에 의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서비스 종결 시 동일한 검사도구로 사후검사도 실시함.</p> <p>* 사전, 사후검사 심리평가도구는 [별표3] 참고</p>	
	<p>2. 부가서비스(선택)</p> <p>①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필요시)</p> <p>② 부모교육 : 아동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 (수시)</p>	필요시 및 수시
	<p>※서비스 내용에서 삭제된 인지프로그램 제공은 서비스 인정 불가</p> <p>○ 서비스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청소년의 문제특성 및 유형에 적합한 영역별 프로그램(언어, 놀이, 미술, 음악, 심리상담)을 선택하고 이용자 욕구, 사전·사후검사, 서비스 내용, 제공절차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및 관리해야 함.</li> </ul> <p>① 1단계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계약 단계 (*서비스 영역별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진단을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 상담 및 욕구 파악</li> <li>- 사전검사 (필수실시-[별표 3]의 심리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기초선 측정 및 결과지 첨부)</li> <li>-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사전검사는 [별표 3]에서 제시하는 심리평가도구를 2개 이상 활용함 (단, 점수화 또는 등급화가 가능한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도구(공통)와 상담사가 서술식으로 기술하는 주관적 심리평가도구 각각 1개 이상 활용)</li> <li>-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동일한 검사도구를 사용하며 2개 이상의 (객관+주관 평가도구)의 평가도구를 활용함(단, 만 3세 이하의 유아인 경우는 객관적 평가도구의 활용은 제외할 수 있음)</li> <li>- 서비스 대상 진입 시 욕구판단을 위해 사용한 객관적 심리평가도구([별표 3]의 공통에 포함되는 심리평가도구)는 사전검사 시 재검사 없이 그대로 활용 가능함.(주관적 검사는 실시해야함)</li> </ul> <p>※ MMPI, K-CBCL, K-ARS, RCMAS, K-PRC, K-CYP, PRES, SELSI</p> <p>※ 부모보고검사로 위의 도구 활용했다면 사전검사로 같음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li> <li>-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상호작성 및 배부</li> </ul> <p>② 2단계 : 서비스 제공 및 중간점검 단계 (*계약이 완료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및 중간점검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li> <li>- 회기별 서비스 제공 기록지 작성</li> <li>- 서비스 당일 2회 연속제공 불가 (단, 보강만 허용)</li> <li>- 서비스 중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계약 기간(1년)을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 1/2시점에 제공인력에 의해 실시.</li> <li>·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욕구변화</li> <li>· 초기 서비스 목표에 따른 이용자의 변화 정도, 추후개입 계획과 제공 서비스의 지속여부, 서비스 변경 내용 등을 기록한 중간평가서 작성</li> </ul> </li> </ul> <p>③ 3단계 : 서비스 종료 단계 (*서비스 제공 종료 및 재 욕구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검사(필수실시-사전검사와 동일한 심리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이용자 변화 측정 및 분석결과 제시)</li> <li>- 사후 심리검사 결과를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종결상담과 종결보고서 작성</li> <li>- 이용자 및 보호자에 대한 서비스 재욕구조사</li> <li>- 종료 시점(계약 기간 만료일, 단, 기타 사항으로 종료되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함)</li> <li>- 서비스 종료 통보</li> </ul>	

항목	내용								
⑥ 집단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서비스 프로그램의 집단규모는 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 이용 (1:1)을 원칙으로 함.</li> <li>○ 단, 집단서비스가 1:1 서비스 보다 효과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인력 소견서, 보호자 동의서를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소집단 프로그램(1:2~1:3)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인력 소견서에는 소집단 프로그램 필요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함</li> <li>- 소집단(1:2) 프로그램의 제공시간은 회당 총 70분으로 프로그램 50분, 부모상담 20분으로 배분</li> <li>- 소집단(1:3) 프로그램의 제공시간은 회당 총 90분으로 프로그램 60분, 부모상담 30분으로 배분</li> </ul> </li> <li>○ 서비스 집단규모가 1:2인 이상일 경우, 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제공장소(소재지)를 필히 작성</li> </ul>								
⑦ 서비스 실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구·군</li> </ul>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li> <li>○ 슈퍼바이저 지정기준 : 제공기관은 반드시 상근근무(전일제) 인력을 슈퍼바이저로 지정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슈퍼바이저 자격 취소 : 슈퍼바이저가 근무시간 내 타 기관의 서비스 제공이 확인될 경우, 슈퍼바이저 지정 취소</li> </ul> </li> <li>○ 서비스 이용자 개별 슈퍼비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슈퍼바이저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대한 슈퍼비전을 수시로 제공함</li> <li>- 초기상담 기록지의 상담결과 및 조치사항 내 슈퍼바이저 의견을 추가하여 서비스 개입방향 및 목표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li> <li>- 서비스제공 1/2 시점에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중간 평가서 작성 시 치료 개입이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슈퍼비전 실시</li> <li>- 슈퍼비전은 제공인력과 슈퍼바이저 일대일 대면으로 진행</li> <li>※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슈퍼비전을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대해서 제공서비스 인정불가</li> </ul> </li> <li>○ 기관은 정기 사례발표회(case conference) 또는 정기 사례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주재하고, 논의된 사례에 대해 일정 수준의 슈퍼비전을 제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회의는 모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80%이상 참석하였을 때 사례회의로 인정</li> <li>- 사례회의 1회당 논의하여야 하는 사례건수는 1건 이상</li> <li>- 소속기관의 제공인력들과 수시로 관심 사례를 논의하는 수시사례회의를 진행하고 논의 과정을 주도함</li> <li>- 사례회의 진행시 참석명단(서명 필요) 및 사진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작성 및 구비</li> <li>- 사례발표회 또는 사례회의의 경우 비대면이 가능하나 사례발표자와 슈퍼바이저는 기관에 함께 내방하여 회의 진행</li> </ul> </li> <li>○ 슈퍼비전 결과보고서 필수 기재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개요(개인정보, 현재문제, 발달사, 가족구조, 사회적 기능 등) , 임상적 증상과 회기 목표, 치료단계, 구체적인 치료계획과 프로그램, 향후 회기에 대한 계획, 기타</li> </ul> </li> <li>○ <b>[별표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사전, 사후 검사의 심리평가도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이용자에게 대한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사전검사는 <b>[별표 3]에서 제시하는 심리평가도구를 2개 이상 활용함 (단, 점수화 또는 등급화가 가능한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도구와 치료사가 서술식으로 기술하는 주관적 심리평가도구 각각 1개 이상 활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3세 이하의 유아인 경우는 객관적 평가도구의 활용은 제외할 수 있음</li> <li>-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동일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함</li> <li>- 서비스 대상의 진입 시 욕구판단을 위해 사용한 심리평가도구([별표 3]의 공통에 포함되는 심리평가도구)는 사전검사로 활용 가능함.</li> <li>- 제공기관은 심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해당 자료를 보관·관리함</li> </ul> </li> </ul> </li> </ul> <table border="1" data-bbox="338 1742 1474 1962"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30%;">서비스 영역</th> <th style="width: 60%;">심리평가도구</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기본 서비스</td> <td style="text-align: center;">객관적 검사</td> <td>PRES, REVT, SELSI, U-TAP(APAC), P-FA, 덴버검사, K-YSR, MMPI, K-CBCL, K-ARS, RCMAS, K-PRC, K-CYP</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관적 검사</td> <td>놀이평가(상호작용기능평가, 언어자발화 분석), HTP, K-HTP, KFD, SCT, KSD, MT-MAP, IMTAP</td> </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 영역	심리평가도구	기본 서비스	객관적 검사	PRES, REVT, SELSI, U-TAP(APAC), P-FA, 덴버검사, K-YSR, MMPI, K-CBCL, K-ARS, RCMAS, K-PRC, K-CYP	주관적 검사	놀이평가(상호작용기능평가, 언어자발화 분석), HTP, K-HTP, KFD, SCT, KSD, MT-MAP, IMTAP
구분	서비스 영역	심리평가도구							
기본 서비스	객관적 검사	PRES, REVT, SELSI, U-TAP(APAC), P-FA, 덴버검사, K-YSR, MMPI, K-CBCL, K-ARS, RCMAS, K-PRC, K-CYP							
	주관적 검사	놀이평가(상호작용기능평가, 언어자발화 분석), HTP, K-HTP, KFD, SCT, KSD, MT-MAP, IMTAP							



항목	내 용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단계 : 이용자 대상 평가·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사전검사 의무실시)</li> <li>2. 2단계 :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전형성 기본유형으로 프로그램 계획시, 리더십프로그램 및 진로탐색프로그램 필수구성</li> <li>▶ 글로벌아동홍스쿨로 프로그램 계획시, 글로벌인재양성 및 자질함양과정, 글로벌 문화의 이해 및 놀이체험과정 모두 필수구성 (※단순 영어학습 지도서비스 제공불가)</li> <li>▶ 서비스 내용 관련 12개월에 대한 워크북, 자료집 등 필수 제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li> <li>②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li> <li>③ 이용자 대상 서비스 효과 검증(소감문, 감상문 등)을 위한 결과물 취합</li> <li>④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li> </ol> </li> </ul> </li> <li>3. 3단계 : 서비스 종료 (사후검사 의무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결 리포트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롤링 페이퍼, 자기 리포트, 사회 공헌활동 등 종결 프로그램 실시</li> </ul> </li> </ol> <p>※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자아존중감척도 또는 진로준비행동검사) 의무실시</p> <p>※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p> <p>※ 아동 비전형성 지원서비스는 아동 및 청소년이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진로탐색을 통해 직업의 기능 및 중요성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므로 단순 학습프로그램으로 서비스 제공은 기준정보(서비스내용) 미준수 임.</p>
⑥ 집단규모	<p>○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글로벌아동홍스쿨은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2인 이내 (1:1~1:12)</p> <p>※ 집단규모가 1:2이상일 경우, 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제공장소(소재지)를 필히 기입</p>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집단활동형은 서비스 제공 중 필요시에만 활용가능)

#### 4 [990108] 아동 체험활동 지원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아동을 대상으로 교과 및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라이프코칭으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정서발달을 지원하고 집단활동을 통한 사회성 향상과 자기 주도적 리더로서의 성장을 도모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li> <li>○ 연 령 : 만7세~만12세(초등학생)(2016년생~2011년생)</li> <li>○ 우선순위</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드림스타트, 구·군 사례관리 대상자</li> <li>2. 신규이용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초 이용자)</li> <li>3.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li> </ol> <p>※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아동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p>																				
③ 제공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상담사, 초등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이하 “사회복지사”)</li> <li>2.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li> <li>3. 학사학위 취득 후 아동체험활동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960시간) 이상인 자</li> <li>4.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라이프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아동체험활동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이 1년(1,920시간) 이상인 자</li> </ol> <p>※ 민간자격정보서비스(<a href="http://www.pqi.or.kr">www.pqi.or.kr</a>)에서 조회되는 자격증 가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li> <li>6. 인문학, 사회과학, 관광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자연과학 전문학사 이상으로 아동체험활동지원서비스 관련 서비스제공 경력이 1년 이상인 자</li> </ol>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가격 : 200천원/월</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20%;">1등급</th> <th style="width: 20%;">2등급</th> <th style="width: 20%;">3등급</th> <th style="width: 20%;">4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 <td>중위소득120%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d> <td>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td> <td>중위소득140%초과~150%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180천원</td> <td>160천원</td> <td>140천원</td> <td>120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20천원</td> <td>40천원</td> <td>60천원</td> <td>80천원</td> </tr> </tbody> </table> <p>※ 가격규제 완화사업 : 기준가격 대비 20%상향, 240천원까지 가능 (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li> </ul>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120%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중위소득140%초과~150%이하	정부지원금	180천원	160천원	140천원	12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40천원	60천원	80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120%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중위소득140%초과~150%이하																	
정부지원금	180천원	160천원	140천원	12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40천원	60천원	80천원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동일한 체험공간에서 반복적인 서비스 제공 불가, 매회기 여행자보험 가입 필수)</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8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20%;">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 라이프코칭 활동(필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서발달,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li> <li>② 예절교육, 인성강화 프로그램</li> <li>③ 올바른 가치관 형성 지원 프로그램(가족, 직업, 역사, 국가관 등)</li> </ol> </li> <li>2. 사회성 증진 활동(선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아동의 비전형성 지원 프로그램 : 팀별 현장 체험과 토의 등 다양한 미션 수행</li> <li>② 조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현장 놀이</li> </ol> </li> </ol>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월2회                      회당 8시간                      *1일 1회                      서비스 원칙                 </td> </tr> </tbody> </table>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 라이프코칭 활동(필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서발달,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li> <li>② 예절교육, 인성강화 프로그램</li> <li>③ 올바른 가치관 형성 지원 프로그램(가족, 직업, 역사, 국가관 등)</li> </ol> </li> <li>2. 사회성 증진 활동(선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아동의 비전형성 지원 프로그램 : 팀별 현장 체험과 토의 등 다양한 미션 수행</li> <li>② 조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현장 놀이</li> </ol> </li> </ol>	월2회 회당 8시간 *1일 1회 서비스 원칙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 라이프코칭 활동(필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서발달,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li> <li>② 예절교육, 인성강화 프로그램</li> <li>③ 올바른 가치관 형성 지원 프로그램(가족, 직업, 역사, 국가관 등)</li> </ol> </li> <li>2. 사회성 증진 활동(선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아동의 비전형성 지원 프로그램 : 팀별 현장 체험과 토의 등 다양한 미션 수행</li> <li>② 조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현장 놀이</li> </ol> </li> </ol>	월2회 회당 8시간 *1일 1회 서비스 원칙																				

항목	내용
	<p>○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단계 : 이용자 대상 평가·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사전검사 의무실시)</li> <li>2. 2단계 :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li> <li>② 연간 계획서 보호자에게 배부</li> <li>③ 매월 아동에 대한 서비스 계획·결과(소감문, 감상문 등) 결과물 취합·배부</li> <li>④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li> </ol> </li> <li>3. 3단계 : 서비스 종료 (사후검사 의무실시)</li> </ol> <p>※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자아존중감척도 또는 사회성척도검사) 의무실시</p> <p>※ 프로그램 실시 아동들의 활동 결과물에 대한 전시회, 발표회 실시</p> <p>※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p>
⑥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5인 이내 (1:1~1:15)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 집단활동형

## 5 [190108] 실버 맞춤형 활동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생활 및 문화예술 여가 지원으로 실질적 기량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통한 아름답고 건강한 노년생활의 영위를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li> <li>○ 연령 : 만60세(1963년생) 이상</li> <li>○ 우선순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규이용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초 이용자)</li> <li>2. 주민등록표 기준 1인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는 우선 선발</li> <li>※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li> </ul> </li> </ol> </li> </ul>																				
③ 제공 인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준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화활동 관련(미술, 음악, 체육과 같은 예체능분야) 학사 취득 후 실버 맞춤형 활동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li> <li>2. 문화활동 관련 국가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자 또는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증 취득 후 실버 맞춤형 활동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조회되는 자격증 가능</li> </ul> </li> <li>3. 문화활동 관련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li> </ol>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가격 : 100천원/월</li> </ul> <table border="1" data-bbox="335 1086 1465 1406"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15%;">1등급</th> <th style="width: 15%;">2등급</th> <th style="width: 15%;">3등급</th> <th style="width: 15%;">4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td> <td>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td> <td>중위소득 120%초과~ 140%이하</td> <td>중위소득 140%초과~ 150%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90천원</td> <td>80천원</td> <td>70천원</td> <td>60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10천원</td> <td>20천원</td> <td>30천원</td> <td>40천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li> </ul>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	중위소득 120%초과~ 140%이하	중위소득 140%초과~ 150%이하	정부지원금	90천원	80천원	70천원	60천원	본인부담금	10천원	20천원	30천원	40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	중위소득 120%초과~ 140%이하	중위소득 140%초과~ 150%이하																	
정부지원금	90천원	80천원	70천원	60천원																	
본인부담금	10천원	20천원	30천원	40천원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li> </ul> <table border="1" data-bbox="351 1541 1452 2007"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8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20%;">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1. 생활여가 지원서비스            ① 민속공예, 원예, 십자수, 퀼트 등            ② 악기교습, 바둑교실, 당구교실, 명상 수련 등 취미 기량증진서비스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주2회            회당 60분            (월8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td> </tr> <tr> <td>           2. 문화예술여가 지원서비스            ① 미술, 도자기, 서예, 음악, 동화구연 등            ② 풍물, 국악, 전통무용, 사교댄스, 댄스 등 문화예술 기량증진 서비스         </td> <td></td> </tr> <tr> <td>           3. 사회참여 지원서비스 (필수)            ① 자체 합창단, 전시회, 발표회 등 운영            ② 각종 경진대회, 외부 전시회, 발표회 등 참여지원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상시         </td> </tr> </tbody> </table>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생활여가 지원서비스 ① 민속공예, 원예, 십자수, 퀼트 등 ② 악기교습, 바둑교실, 당구교실, 명상 수련 등 취미 기량증진서비스	주2회 회당 60분 (월8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문화예술여가 지원서비스 ① 미술, 도자기, 서예, 음악, 동화구연 등 ② 풍물, 국악, 전통무용, 사교댄스, 댄스 등 문화예술 기량증진 서비스		3. 사회참여 지원서비스 (필수) ① 자체 합창단, 전시회, 발표회 등 운영 ② 각종 경진대회, 외부 전시회, 발표회 등 참여지원	상시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생활여가 지원서비스 ① 민속공예, 원예, 십자수, 퀼트 등 ② 악기교습, 바둑교실, 당구교실, 명상 수련 등 취미 기량증진서비스	주2회 회당 60분 (월8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문화예술여가 지원서비스 ① 미술, 도자기, 서예, 음악, 동화구연 등 ② 풍물, 국악, 전통무용, 사교댄스, 댄스 등 문화예술 기량증진 서비스																					
3. 사회참여 지원서비스 (필수) ① 자체 합창단, 전시회, 발표회 등 운영 ② 각종 경진대회, 외부 전시회, 발표회 등 참여지원	상시																				

항목	내용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단계 : 이용자 대상 평가·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사전검사 의무실시)</li> <li>2. 2단계 :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 운동 및 손유희, 스트레칭, 노래 등 서비스 제공 불가</li> <li>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li> <li>②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li> <li>③ 사회참여지원서비스 상시제공(연1회 이상) : 자체 기량 경진대회, 발표회, 전시회 등 또는 외부경진대회, 전시회, 발표회 등의 참여 지원</li> </ul> </li> <li>3. 3단계 : 서비스 종료 (사후검사 의무실시)</li> </ol> </li> <li>※ 서비스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생활만족도 검사) 의무실시</li> <li>※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li> </ul>
⑥ 집단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시설에서 서비스 제공시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20인 이내 (1:1~1:20)</li> <li>○ 노인이용시설(경로당 등)에서 서비스 제공시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0인 이내 (1:1~1:10)</li> <li>※ 집단규모가 1:2인 이상일 경우, 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장소(소재지) 필수 기재</li> </ul>
⑦ 서비스 실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구·군</li> </ul>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또는 재가방문형(제공기관 선택)</li> </ul>

## 6 [190208] 어르신 생기발랄(구. 실버심리지원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치매, 우울, 자살 등 노년의 각종 어려움에 대한 정서적 지원으로 치매예방 및 사회참여 증진을 통한 활기차고 즐거운 삶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 중위소득 150%이하</li> <li>○ 연령 : 만65세(1958년생) 이상</li> <li>○ 선정기준</li> <li>1.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보건전문요원1급 소견서, 보건소장 추천이 있는 경우</li> <li>2. * 치매(치매간이선별검사 MMSE-DS, CDR, ADL, 7분치매검사)</li> <li style="padding-left: 20px;">* 우울증(노인우울척도 GDS-K(19점 이상), Beck우울척도(16점 이상), 한국형단축노인우울척도 GDSSF-K(6점 이상), 정신신경증상 척도</li> <li style="padding-left: 20px;">* Beck자살생각 척도(17점 이상), 한국판지각된스트레스척도 PSS-K(14점 이상)</li> <li style="padding-left: 20px;">위의 척도 중 증상에 맞춰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신청 시 검사 결과지 필수 제출)(P73~ 척도 참고)</li> <li>3. 노인 폭행·학대·방치 및 사회적 고립 등에 따른 긴급 심리지원 대상자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자)</li> <li>○ 우선순위</li> <li style="padding-left: 20px;">1.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자(서류없음)</li> <li style="padding-left: 20px;">2.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 병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검사결과 위험군으로 선별되어 추천된 자 (6개월 이내의 진단서, 소견서첨부)</li> <li style="padding-left: 20px;">3. 치매, 우울증, 자살생각척도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자(검사결과지 제출)</li> <li style="padding-left: 20px;">※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1인가구, 소득수준 순</li> </ul>																				
③ 제공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li> <li>2. 예술심리치료사, 심리상담사, 예술전공교원자격증 소지자, 라이프코칭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자</li> <li>3.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교육기관(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치매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인지,놀이,상담 등 관련 민간자격소지자</li> <li>4.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치매 예방 관련 자격소지자(취득과정 60시간 이상)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인지,놀이,상담 등 민간자격소지자</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자격기본법」 제17조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a href="http://www.pqi.or.kr">www.pqi.or.kr</a>)에서 조회되는 자격증</p>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가격 : 160천원/월</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20%;">1등급</th> <th style="width: 20%;">2등급</th> <th style="width: 20%;">3등급</th> <th style="width: 20%;">4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td> <td>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td> <td>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td> <td>중위소득 140%초과~150%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144천원</td> <td>128천원</td> <td>112천원</td> <td>96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16천원</td> <td>32천원</td> <td>48천원</td> <td>64천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기간 : 10개월, 재판정1회(만70세 이상 위험군)</li> </ul>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중위소득 140%초과~150%이하	정부지원금	144천원	128천원	112천원	96천원	본인부담금	16천원	32천원	48천원	64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중위소득 140%초과~150%이하																	
정부지원금	144천원	128천원	112천원	96천원																	
본인부담금	16천원	32천원	48천원	64천원																	

항목	내용				
<p>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p>	<p>○ 서비스 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347 369 1385 824"> <thead> <tr> <th data-bbox="347 369 1230 423">서비스 내용</th> <th data-bbox="1230 369 1385 423">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47 423 1230 824"> <p><b>1. 개별 또는 집단 상담 (월2회)</b>            개인의 일상 또는 문제상황에 대한 상담지원</p> <p><b>2. 인지·정서지원서비스 (월6회)</b></p> <p>① 퇴행성기억상실 및 치매 예방서비스            : 인지훈련, 회상훈련, 두뇌게임, 퍼즐교구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두뇌활성화 활동</p> <p>② 심인성기억상실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장애 치유·안정을 위한 인지 향상서비스</p> <p>③ 치매예방, 우울증해소와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p> <p>④ 심리치유와 정서안정효과 극대화 대체활동(산책, 건강체조 등)</p> </td> <td data-bbox="1230 423 1385 824"> <p>월8회 (주2회) 회당 6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p> </td> </tr> </tbody> </table> <p>○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 이용자 대상 평가·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사전검사 의무실시)</li> <li>2단계 :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li> <li>②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li> </ol> </li> <li>3단계 : 서비스 종료 (사후검사 의무실시)</li> </ol> <p>※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치매·우울증·자살생각척도, 생활만족도 중 2개 이상 실시) 의무 실시        ※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p>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p><b>1. 개별 또는 집단 상담 (월2회)</b>            개인의 일상 또는 문제상황에 대한 상담지원</p> <p><b>2. 인지·정서지원서비스 (월6회)</b></p> <p>① 퇴행성기억상실 및 치매 예방서비스            : 인지훈련, 회상훈련, 두뇌게임, 퍼즐교구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두뇌활성화 활동</p> <p>② 심인성기억상실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장애 치유·안정을 위한 인지 향상서비스</p> <p>③ 치매예방, 우울증해소와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p> <p>④ 심리치유와 정서안정효과 극대화 대체활동(산책, 건강체조 등)</p>	<p>월8회 (주2회) 회당 6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p>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p><b>1. 개별 또는 집단 상담 (월2회)</b>            개인의 일상 또는 문제상황에 대한 상담지원</p> <p><b>2. 인지·정서지원서비스 (월6회)</b></p> <p>① 퇴행성기억상실 및 치매 예방서비스            : 인지훈련, 회상훈련, 두뇌게임, 퍼즐교구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두뇌활성화 활동</p> <p>② 심인성기억상실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장애 치유·안정을 위한 인지 향상서비스</p> <p>③ 치매예방, 우울증해소와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p> <p>④ 심리치유와 정서안정효과 극대화 대체활동(산책, 건강체조 등)</p>	<p>월8회 (주2회) 회당 6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p>				
<p>⑥ 집단규모</p>	<p>○ 제공인력 1명당 10명 이내(1:1~1:10)        ※단일공간에서 집단규모 통합 실시 불가</p>				
<p>⑦ 서비스 실시지역</p>	<p>○ 전 구·군</p>				
<p>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p>	<p>○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 서비스 제공장소로 노인이용시설(경로당) 이용 불가</p>				

## 7 [080108] 사랑나눔안마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임산부 또는 출산 관련 질환자,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 진단자,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인, 퇴행성 질환자의 근골격계·신경계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전신안마, 발마사지, 지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li> <li>○ 연령 : 제한없음</li> <li>○ 선정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신청시 부상사고로 인한 재활필요자라는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중 제출)</li> <li>2. 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장애인(장애인 등록증 제출)</li> <li>3.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이 있는 자 (신청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중 제출)</li> <li>4 임부(신청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중 제출)</li> </ol> </li> <li>※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li> <li>○ 우선순위별 선정비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 : 10%</li> <li>2.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인 : 10%</li> <li>3.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5세 이상 : 40%</li> <li>4. 임부 : 10%</li> <li>5.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4세 이하 : 30%</li> </ol> </li> <li>※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li> </ul>																				
③ 제공기관	<p>‘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p> <p>*안마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의료법 제82조 제3항에 의한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음</p>																				
④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사</li> </ul> <p>※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준수</p>																				
⑤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p>○ 서비스 가격 : 168천원/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20%;">1등급</th> <th style="width: 20%;">2등급</th> <th style="width: 20%;">3등급</th> <th style="width: 20%;">4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td> <td>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자</td> <td>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td> <td>중위소득 140%초과~150%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151,200원</td> <td>134,400원</td> <td>117,600원</td> <td>100,800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16,800원</td> <td>33,600원</td> <td>50,400원</td> <td>67,2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자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중위소득 140%초과~150%이하	정부지원금	151,200원	134,400원	117,600원	100,800원	본인부담금	16,800원	33,600원	50,400원	67,200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자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중위소득 140%초과~150%이하																	
정부지원금	151,200원	134,400원	117,600원	100,800원																	
본인부담금	16,800원	33,600원	50,400원	67,200원																	

	<p>※ 가격규제 일부 완화사업 : 재가방문서비스에 한하여 기준가격 대비 20%상향, 192천원까지 가능 (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p> <p>○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1회</p> <p>※ 재판정은 서비스가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만 인정</p>			
<b>항목</b>	<b>내용</b>			
<b>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b>	○ 서비스 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서비스 내용</th> <th style="text-align: center;">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1.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 개선을 위한 수기요법              ①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등              ② 체형교정(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2.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안마서비스 제공         </td> <td style="text-align: center;">           주1회            회당 60분            (월4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td> </tr> </tbody> </table>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 개선을 위한 수기요법 ①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등 ② 체형교정(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2.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안마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 개선을 위한 수기요법 ①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등 ② 체형교정(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2.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안마서비스 제공	주1회 회당 60분 (월4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 서비스 제공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단계 : 이용자 대상 평가·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사전검사 의무실시)</li> <li>2. 2단계 :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li> <li>②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li> </ol> </li> <li>3. 3단계 : 서비스 종료 (사후검사 의무실시)</li> </ol> <p>※ 서비스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근골격계질환증상조사) 의무실시</p> <p>※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p>			
<b>⑦ 집단규모</b>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인 원칙 (1:1 원칙)			
<b>⑧ 서비스 실시지역</b>	○ 전 구·군			
<b>⑨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b>	<p>○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또는 재가방문형</p> <p>- 서비스 제공장소로 노인이용시설(경로당) 이용 불가</p> <p>○ 서비스 제공장소 제한 : 기관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거동불편자 대상 재가방문 가능하며, 노인이용시설(경로당)에서의 서비스 제공 및 결제 불가</p>			

## 8 [070101]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득 : 제한없음</li> <li>○ 연 령 : 만 24세(1999년생)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li> <li>○ 선정기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li> <li>2.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 청소년 (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li> </ol> <p>* 「장애인복지법」 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p> <p>**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p> </li> </ul>																
③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준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조공학사, 의지·보조기 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li> <li>2.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자</li> <li>3.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li> <li>4.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분야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li> </ol>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p>○ 서비스 가격 : 720천원/반기 (120천원/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1등급</th> <th>2등급</th> <th>3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 <td>중위소득 14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d> <td>중위소득 140% 초과</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648천원</td> <td>576천원</td> <td>504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72천원</td> <td>144천원</td> <td>216천원</td> </tr> </tbody> </table> <p>○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이 있는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 한 등급씩 하향조정 (3등급→2등급, 2등급→1등급), 재판정 5회(단, 신규이용자에게는 대기자 비율에 따라 시군구에서 재판정 결정)</p>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4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 140% 초과	정부지원금	648천원	576천원	504천원	본인부담금	72천원	144천원	216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4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 140% 초과														
정부지원금	648천원	576천원	504천원														
본인부담금	72천원	144천원	216천원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 서비스 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8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20%;">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①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지원서비스</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렌탈 12개월 정기점검: 연2회 수시점검: 제한없음</td> </tr> <tr> <td>2. 점검 및 유지보수 ①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예: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②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 및 유지보수(예: AS, 소모품교환, 수리, 교정 등)</td> </tr> <tr> <td>3. 상담 및 정보제공 ①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②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및 불만처리, AS 상담 등</td> </tr> </tbody> </table> <p>○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단계 : 시작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li> <li>2. 2단계 : 계약체결, 맞춤형 보조기기 인도 및 대여 서비스 제공</li> <li>3. 3단계 : 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제공, 교환·회수 등 사후관리(종료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실시)</li> </ol> <p>※ 서비스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신체불편정도조사) 의무실시</p>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①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지원서비스	렌탈 12개월 정기점검: 연2회 수시점검: 제한없음	2. 점검 및 유지보수 ①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예: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②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 및 유지보수(예: AS, 소모품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 정보제공 ①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②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및 불만처리, AS 상담 등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①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지원서비스	렌탈 12개월 정기점검: 연2회 수시점검: 제한없음																
2. 점검 및 유지보수 ①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예: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②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 및 유지보수(예: AS, 소모품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 정보제공 ①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②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및 불만처리, AS 상담 등																	
⑥ 집단규모	○ 해당없음 (단, 동일 제공인력이 담당하는 이용자 간 점검·유지보수 등 실제 서비스 시간 중복 금지)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국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 재가방문형																

## 9 [280108] 건강증진 맞춤형운동 지도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상태 상담·점검을 통한 맞춤형 신체활동 지원으로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li> <li>○ 연령 : 만 7세(2016년생) 이상</li> <li>○ 선정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부전, 심부전, 고혈압, 당뇨, 갑상선, 고지혈증 질환자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있는 사람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신청시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제출)</li> <li>2. 장애인, 12주 이상 임부(신청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중 제출),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li> <li>3. 만7세~65세 미만 중 심신의 문제 및 비만으로 운동을 요하는 자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신청시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중 제출)</li> <li>※ 비만은 보건소 및 병원에서 체지방(인바디 등)을 측정하고 본인확인이 가능한 검사결과지 제출 (체지방률 측정결과 경도비만(남성:20%이상 / 여성28%이상으로 판정되면 신청가능)</li> <li>4. 만65세 이상 노인(구비서류 없음)</li> <li>※ 임신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li> </ol> </li> <li>○ 우선순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부전, 심부전, 고혈압, 당뇨, 갑상선, 고지혈증 질환자리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제출</li> <li>2. 장애인 (장애등급 순)</li> <li>3. 심신유약자 및 비만 중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자 (비만은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실시한 인바디 검사 결과지 제출 가능)</li> <li>4. 임부(12주 이상), 산모(출산 후 1년 미만)</li> <li>※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li> </ol> </li> <li>○ 연령별 선정 비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청소년(만7세~18세 이하):30%</li> <li>2. 성인(만19세~64세 이하):20%</li> <li>3. 노인(만65세 이상): 50%</li> </ol> </li> </ul>																																
③ 제공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모든 제공인력은 응급처치교육(4시간 이상)을 연1회 의무이수</li> <li>2.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체육관련 교원자격증 소지자</li> <li>②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 제공종목은 동일하여야함), 동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동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장애인대상에 한함), 동 시행령 제9조의5에 따른 노인스포츠지도사(노인대상에 한하며, 자격종목과 서비스 제공종목은 동일하여야함) 자격증 취득 후 건강증진 맞춤형운동 지도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li> <li>③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건강증진 맞춤형운동 지도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li> <li>④ 생활스포츠지도자 자격증 과정에 없는 종목의 경우 자격기본법에 의한 해당 민간자격증 취득 후 건강증진 맞춤형운동 지도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li> </ol> </li> <li>※ 민간자격정보서비스(<a href="http://www.pqi.or.kr">www.pqi.or.kr</a>)에서 조회되는 자격증 가능</li> <li>3.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공인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이하 “영양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 정교사(이하 “초등정교사”),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에 의한 보건교육사(이하 “보건교육사”), 간호사</li> </ol>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가격</li> <li>1. 장애인, 임부(임신 12주 이상), 산모(출산 후 1년 미만),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등) : 180천원/월</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e1f2;"> <th>구분</th> <th>1등급</th> <th>2등급</th> <th>3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td> <td>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td> <td>중위소득120%초과~150%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162천원</td> <td>144천원</td> <td>126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18천원</td> <td>36천원</td> <td>54천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만7세 이상 심신유약자 및 비만, 만65세 이상 노인 : 140천원/월</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e1f2;"> <th>구분</th> <th>4등급</th> <th>5등급</th> <th>6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td> <td>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td> <td>중위소득120%초과~150%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126천원</td> <td>112천원</td> <td>98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14천원</td> <td>28천원</td> <td>42천원</td> </tr> </tbody> </table>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	중위소득120%초과~150%이하	정부지원금	162천원	144천원	126천원	본인부담금	18천원	36천원	54천원	구분	4등급	5등급	6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	중위소득120%초과~150%이하	정부지원금	126천원	112천원	98천원	본인부담금	14천원	28천원	42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	중위소득120%초과~150%이하																														
정부지원금	162천원	144천원	126천원																														
본인부담금	18천원	36천원	54천원																														
구분	4등급	5등급	6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	중위소득120%초과~150%이하																														
정부지원금	126천원	112천원	98천원																														
본인부담금	14천원	28천원	42천원																														

항목	내 용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가격규제 완화사업 : 기준가격 대비 20%상향, 1~3등급은 216천원까지, 4~6등급은 168천원까지 가능(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 ○ 서비스 제공기간 : 10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이용 대상자 별 맞춤형 지도 서비스 제공 <table border="1" data-bbox="347 439 1461 1966"> <thead> <tr> <th data-bbox="347 439 1177 488">서비스 내용</th> <th data-bbox="1177 439 1461 488">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47 488 1177 770">           1. 장애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 놀이재활 프로그램 : 정서, 행동, 발달, 상호작용 촉진활동         </td> <td data-bbox="1177 488 1461 770">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월8회) 또는 주3회, 회당 60분(월2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td> </tr> <tr> <td data-bbox="347 770 1177 1052">           2. 산모, 임산부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 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 임산부요가, 라마즈 교육 등 건강증진 운동         </td> <td data-bbox="1177 770 1461 1052">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월8회) 또는 주3회, 회당 60분(월2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td> </tr> <tr> <td data-bbox="347 1052 1177 1375">           3. 노인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 운동 : 볼과 밴드를 이용한 근력, 근지구력, 평형성, 교차성 발달 지원 운동            - 전문장비를 활용한 운동지도 또는 수중운동, 댄스스포츠, 요가(필라테스) 등         </td> <td data-bbox="1177 1052 1461 1375">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월8회) 또는 주3회, 회당 60분(월2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td> </tr> <tr> <td data-bbox="347 1375 1177 1657">           4. 만성질환자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지도            - 건강관리프로그램 : 식사조절 및 건강 교육, 정보제공(월1회만 허용)         </td> <td data-bbox="1177 1375 1461 1657">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월8회) 또는 주3회, 회당 60분(월2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td> </tr> <tr> <td data-bbox="347 1657 1177 1966">           5. 일반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기구필라테스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한 운동            ※ 초등학교 대상 서비스 제공 시,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수영, 발레, 무용으로 서비스 제공 불가         </td> <td data-bbox="1177 1657 1461 1966">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월8회) 또는 주3회, 회당 60분(월2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td> </tr> </tbody> </table>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장애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 놀이재활 프로그램 : 정서, 행동, 발달, 상호작용 촉진활동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월8회) 또는 주3회, 회당 60분(월2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산모, 임산부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 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 임산부요가, 라마즈 교육 등 건강증진 운동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월8회) 또는 주3회, 회당 60분(월2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3. 노인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 운동 : 볼과 밴드를 이용한 근력, 근지구력, 평형성, 교차성 발달 지원 운동 - 전문장비를 활용한 운동지도 또는 수중운동, 댄스스포츠, 요가(필라테스) 등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월8회) 또는 주3회, 회당 60분(월2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4. 만성질환자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지도 - 건강관리프로그램 : 식사조절 및 건강 교육, 정보제공(월1회만 허용)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월8회) 또는 주3회, 회당 60분(월2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5. 일반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기구필라테스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한 운동 ※ 초등학교 대상 서비스 제공 시,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수영, 발레, 무용으로 서비스 제공 불가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월8회) 또는 주3회, 회당 60분(월2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장애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 놀이재활 프로그램 : 정서, 행동, 발달, 상호작용 촉진활동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월8회) 또는 주3회, 회당 60분(월2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산모, 임산부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 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 임산부요가, 라마즈 교육 등 건강증진 운동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월8회) 또는 주3회, 회당 60분(월2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3. 노인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 운동 : 볼과 밴드를 이용한 근력, 근지구력, 평형성, 교차성 발달 지원 운동 - 전문장비를 활용한 운동지도 또는 수중운동, 댄스스포츠, 요가(필라테스) 등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월8회) 또는 주3회, 회당 60분(월2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4. 만성질환자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지도 - 건강관리프로그램 : 식사조절 및 건강 교육, 정보제공(월1회만 허용)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월8회) 또는 주3회, 회당 60분(월2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5. 일반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기구필라테스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한 운동 ※ 초등학교 대상 서비스 제공 시,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수영, 발레, 무용으로 서비스 제공 불가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월8회) 또는 주3회, 회당 60분(월2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항목	내 용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단계 : 이용자 대상 평가·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사전검사 의무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상담 시, 개인별 운동지도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 서류(운동지도기록지 등)를 필히 작성</li> </ul> </li> <li>2. 2단계 :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li> <li>① 반기별 1회 기본프로그램 실시</li> <li>②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li> </ul> </li> <li>3. 3단계 : 서비스 종료 (사후검사 의무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건강체력 측정/평가, 체성분검사 중 한가지 이상) 의무실시</li> <li>※ 집단규모가 1:2인 이상일 경우, 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제공장소(소재지)를 필히 기입</li> <li>※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li> </ul> </li> </ol>
⑥ 집단규모	<p>○ 1~3등급 : 제공인력 1명당 서비스 이용자 10인 이내 (1:1~1:10)</p> <p>○ 4~6등급 : 제공인력 1명당 서비스 이용자 15인 이내 (1:1~1:15)</p> <p>※ 노인이용시설(경로당)이용 운동 시 제공인력 1명당 서비스 이용자 8인 이내(1:1~1:8)</p> <p>※ 서비스제공을 위한 전용시설(수영장, 강좌 전용공간) 이용시 제공인력 1명당 서비스 이용자 15인 이내(1:1~1:15)</p>
⑦ 서비스 실시지역	<p>○ 전 구·군</p>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p>○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또는 재가방문형 (제공기관 선택)</p>

## 10 [210108] 직업능력발달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장애인, 경력단절자, 청소년 등 일반인들의 직업생활준비(자격증 취득 등), 창업과 재취업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 배양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회적일자리 창출 활성화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li> <li>○ 연령 : 만14세~만64세 이하(2009년생~1959년생)</li> <li>○ 우선순위 : 1. 경력단절(4대보험 중 1개 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 또는 구직활동 중인 자 (워크넷 등의 구직활동 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li> <li style="padding-left: 20px;">2. 장애인</li> </ul> <p>※ 장애인 이용자 5% 필수 선정</p> <p>※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p> <p>※ 직업이 있거나, 일한경력이 없어도 신청 가능</p>																				
③ 제공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인대상 서비스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업훈련 등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li> <li>2. 직업능력발달서비스로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부합하는 관련 전공자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직업능력발달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li> <li>② 학사학위 취득 후 직업능력발달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li> <li>③ 석사학위 취득 후 직업능력발달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li> </ol> </li> <li>3.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증 취득 후 직업능력발달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p style="margin-left: 20px;">※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조회되는 자격증 가능</p> </li> </ol> </li> <li>○ 장애인대상 서비스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복지사, 특수학교교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li> <li>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 교육학, 직업재활,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학사학위 취득 후 장애인 복지사업에 6개월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li> <li>3. 직업훈련 등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복지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li> <li>4.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복지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li> </ol> <p>※ 공예자격증 중 토탈공예자격증은 제공인력 자격으로 인정 불가하며, 개별 공예자격증으로 등록 가능</p> <p>※ 공예관련 실무경력의 경우, 제공하고자 하는 세부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경력 뿐만 아니라 다른 공예 실무경력도 인정되나, 제공하고자 하는 세부프로그램에 대한 개별 민간 자격증은 보유하고 있어야 함</p> </li> </ul>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가격 : 200천원/월</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d9d9;"> <th>구분</th> <th>1등급</th> <th>2등급</th> <th>3등급</th> <th>4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 <td>중위소득 120%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d> <td>중위소득120% 초과~140%이하</td> <td>중위소득 140% 초과~150%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180천원</td> <td>160천원</td> <td>140천원</td> <td>120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20천원</td> <td>40천원</td> <td>60천원</td> <td>80천원</td> </tr> </tbody> </table> <p>※ 가격규제 완화사업 : 기준가격 대비 20%상향, 240천원까지 가능(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li> </ul>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120% 초과~140%이하	중위소득 140% 초과~150%이하	정부지원금	180천원	160천원	140천원	12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40천원	60천원	80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120% 초과~140%이하	중위소득 140% 초과~150%이하																	
정부지원금	180천원	160천원	140천원	12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40천원	60천원	80천원																	

항목	내용								
<p>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p>	<p>○ 서비스 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347 338 1455 831"> <thead> <tr> <th data-bbox="347 338 1262 383">서비스 내용</th> <th data-bbox="1262 338 1455 383">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47 383 1262 465">           1. 직업능력 배양 과목 이론 강좌 및 실습            ① 서비스 이론 강좌 및 실습 ② 창업 및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td> <td data-bbox="1262 383 1455 465"></td> </tr> <tr> <td data-bbox="347 465 1262 775">           2. 직업 재활 및 능력발달 프로그램            ① 장애인 프로그램 : 직업재활 프로그램, 사회성, 정서강화 지원프로그램            ② 일반인 프로그램            - 진로육구조사 및 적성검사 필수실시            - 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발달 프로그램(자격증과정, 강사과정 등)            - 직업체험활동 프로그램            - 사회성, 정서강화 지원 프로그램(장애인과 일반인 공동 실습 등 부가활동)         </td> <td data-bbox="1262 465 1455 775">           주2회(월8회)            회당 120분            (장애인 1:1 서비스는 9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         </td> </tr> <tr> <td data-bbox="347 775 1262 831">           3. 각종 전시회, 판매회, 박람회 등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         </td> <td data-bbox="1262 775 1455 831">           상시         </td> </tr> </tbody> </table>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직업능력 배양 과목 이론 강좌 및 실습 ① 서비스 이론 강좌 및 실습 ② 창업 및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2. 직업 재활 및 능력발달 프로그램 ① 장애인 프로그램 : 직업재활 프로그램, 사회성, 정서강화 지원프로그램 ② 일반인 프로그램 - 진로육구조사 및 적성검사 필수실시 - 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발달 프로그램(자격증과정, 강사과정 등) - 직업체험활동 프로그램 - 사회성, 정서강화 지원 프로그램(장애인과 일반인 공동 실습 등 부가활동)	주2회(월8회) 회당 120분 (장애인 1:1 서비스는 9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	3. 각종 전시회, 판매회, 박람회 등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	상시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직업능력 배양 과목 이론 강좌 및 실습 ① 서비스 이론 강좌 및 실습 ② 창업 및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2. 직업 재활 및 능력발달 프로그램 ① 장애인 프로그램 : 직업재활 프로그램, 사회성, 정서강화 지원프로그램 ② 일반인 프로그램 - 진로육구조사 및 적성검사 필수실시 - 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발달 프로그램(자격증과정, 강사과정 등) - 직업체험활동 프로그램 - 사회성, 정서강화 지원 프로그램(장애인과 일반인 공동 실습 등 부가활동)	주2회(월8회) 회당 120분 (장애인 1:1 서비스는 9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								
3. 각종 전시회, 판매회, 박람회 등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	상시								
<p>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p>	<p>○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 이용자 대상 평가·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사전검사 의무실시)</li> <li>2단계 :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li> <li>② 창업 및 재취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li> <li>③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li> </ol> </li> <li>3단계 : 서비스 종료 (사후검사 의무실시)</li> </ol> <p>※ 이용자 대상 사전검사(진로육구조사와 적성검사), 사후검사(자격증 취득현황과 이용 만족도) 의무실시</p> <p>※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p>								
<p>⑥ 집단규모</p>	<p>○ 장애인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5인 이내 (1:1~1:5)</p> <p>○ 일반인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0인 이내 (1:1~1:10)</p>								
<p>⑦ 서비스 실시지역</p>	<p>○ 전 구군</p>								
<p>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p>	<p>○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p> <p>○ 식품위생 관련 프로그램 진행 시, 대표 및 해당 제공인력은 서비스 개시 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 하고 이후 매년 1회 건강진단 필수 실시(건강진단 검진일 기준)</p> <p>※ 필수건강진단 항목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p> <p>○ 고급과정 운영에 따른 재료비 가격 상승분은 서비스 이용자 동의에 따라 본인부담을 원칙</p> <p>○ 자격증 취득과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 「자격기본법」에 준하여 제공기관 운영</p>								

# 11 [170108] 가족이음 서비스(구.부모학교 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전문 심리상담과 교육을 통한 가족 정서 회복과 유대감 향상으로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 능력, 태도 등을 지도하여 효과적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li> <li>○ 연 령 : 제한없음</li> <li>○ 가구특성 : 예비부모(결혼한 성인), 조부모·한부모, 자녀(연령없음)를 둔 부모</li> <li>※ 임신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li> <li>○ 선정기준</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고위험)</b>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가 있는 자</li> <li>2. <b>(잠 재)</b>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록 제공기관 소견서가 있는 자</li> </ol> <p>※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소득수준(낮은) 순</p>																				
③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준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복지학, 가정학, 상담학, 심리학, 미술치료학, 놀이치료학 석사 학위 취득 후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에서 상담 또는 교육 관련 강의경력 6개월 이상인 자</li> <li>2. 사회복지학, 가정학, 심리학, 상담학, 미술치료학, 놀이치료학 학사 학위 취득 후 가족상담 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부모교육 자격증 또는 가족상담전문자격증 필수 소지자)</li> <li>3. 사회복지학, 가정학, 심리학, 상담학, 미술치료학, 놀이치료학 석사학위 취득 후 가족상담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부모교육 자격증 또는 가족상담전문자격증 필수 소지자)</li> </ol>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p>○ 서비스 가격 : 200천원/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d9d9;">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d9d9d9;">1등급</th> <th style="background-color: #d9d9d9;">2등급</th> <th style="background-color: #d9d9d9;">3등급</th> <th style="background-color: #d9d9d9;">4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 <td>중위소득120%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미인자</td> <td>중위소득120%초과 ~140%이하</td> <td>중위소득140%초과 ~160%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180천원</td> <td>160천원</td> <td>140천원</td> <td>120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20천원</td> <td>40천원</td> <td>60천원</td> <td>80천원</td> </tr> </tbody> </table> <p>※ 가격규제 완화사업 : 기준가격 대비 20%상향, 24만원까지 가능(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p> <p>○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p>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120%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미인자	중위소득120%초과 ~140%이하	중위소득140%초과 ~160%이하	정부지원금	180천원	160천원	140천원	12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40천원	60천원	80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120%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미인자	중위소득120%초과 ~140%이하	중위소득140%초과 ~160%이하																	
정부지원금	180천원	160천원	140천원	12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40천원	60천원	80천원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 서비스 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d9d9;">서비스 내용</th> <th style="background-color: #d9d9d9;">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1. 심리상담 프로그램(월 3회 이상으로 필수 구성)</td>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월4회(주1회) 회당 5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                 </td> </tr> <tr> <td>2. 자녀 양육 및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선택)</td> </tr> <tr> <td>3. 부모·자녀 또는 부부관계 개선프로그램 (선택)</td> </tr> <tr> <td>4.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부모자조모임) (선택)</td> </tr> </tbody> </table>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심리상담 프로그램(월 3회 이상으로 필수 구성)	월4회(주1회) 회당 5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자녀 양육 및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선택)	3. 부모·자녀 또는 부부관계 개선프로그램 (선택)	4.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부모자조모임) (선택)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심리상담 프로그램(월 3회 이상으로 필수 구성)	월4회(주1회) 회당 5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자녀 양육 및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선택)																					
3. 부모·자녀 또는 부부관계 개선프로그램 (선택)																					
4.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부모자조모임) (선택)																					

항목	내용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단계 : 이용자 대상 평가·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사전검사 의무실시)</li> <li>2. 2단계 :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li> <li>②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li> </ol> </li> <li>3. 3단계 : 서비스 종료 (사후검사 의무실시)</li> </ol> </li> <li>※ 서비스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부모자녀관계척도 K-PRQ) 의무실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이용자는 사전·사후검사로 부모양육스트레스검사 K-PSI척도 가능)</li> <li>※ <b>부부이음 이용자 : MMPI, BDI중 1개 사용</b></li> <li>※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li> </ul>
⑥ 집단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상담 프로그램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인 원칙 (1:1원칙)</li> <li>○ 심리상담 프로그램 외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5인 이내 (1:1~1:5)</li> <li>※ 집단규모 1:1은 50분, 1:2이상은 120분 서비스 제공</li> </ul>
⑦ 서비스 실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구·군</li> </ul>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li> </ul>

## 12 [170308] 임신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 및 정서안정 지원으로 산모의 자존감 향상,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경감과 산모의 생활건강 증진으로 출산과 양육을 장려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li> <li>○ 연 령 : 제한없음</li> <li>○ 선정기준 :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 <b>((출산 전)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출산 후)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b></li> <li>※ 부모학교서비스,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 사랑나눔안마서비스, 성인(청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li> <li>○ 우선순위 : 1. 미혼모, 한부모, 2. 첫아이가구, 3. 다문화가정, 4. 기초생활수급자</li> <li>※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li> </ul>																				
③ 제공 인력	<p>1. 심리상담 제공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심리, 상담,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등 심리상담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사학위 취득 후 성인상담 관련 실무경력 6개월(960시간) 이상인 자</li> <li>- 석사학위 취득 후 성인상담 관련 실무경력 3개월(480시간) 이상인 자</li> </ul> </li> <li>②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li> </ul> <p>2. 산모학교서비스 제공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산후관리사,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중 산모학교서비스 관련 교육 경력 3개월(480시간) 이상인 자</li> <li>② 아동복지학, 아동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등 관련학과 학사 이상으로 “영유아보육법” 제 21조에 의한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2항에 의한 유치원정교사 중 한가지 이상 자격증 취득 후 산모학교서비스 관리 관련 교육 경력 6개월(960시간) 이상인 자</li> </ul> <p>3.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태교, 문화활동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임신부 대상 건강증진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li> <li>※ 민간자격정보서비스(<a href="http://www.pqi.or.kr">www.pqi.or.kr</a>)에서 조회되는 자격증 가능</li> <li>②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 중 임신부 교육관련 경력 3개월 이상인 자</li> <li>③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li> <li>④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 제공종목은 동일하여야함), 동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취득 후 건강증진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li> <li>⑤ 생활스포츠지도자 자격증 과정에 없는 종목의 경우(요가, 필라테스, 아쿠아로빅 등)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증 취득 후 건강증진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년(5,760시간) 이상인 자</li> </ul>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준수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p>○ 서비스 가격 : 160천원/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20%;">1등급</th> <th style="width: 20%;">2등급</th> <th style="width: 20%;">3등급</th> <th style="width: 20%;">4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 <td>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d> <td>중위소득120%초과 ~140%이하</td> <td>중위소득140%초과 ~160%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144천원</td> <td>128천원</td> <td>112천원</td> <td>96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16천원</td> <td>32천원</td> <td>48천원</td> <td>64천원</td> </tr> </tbody> </table> <p>※가격규제 완화사업 : 기준가격 대비 20%상향, 192천원까지 가능(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p> <p>○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서비스 신청 후 10개월 내 서비스 이용 가능), 재판정 1회(우울증 고위험군)</p> <p>※ 재판정은 서비스가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만 인정</p>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120%초과 ~140%이하	중위소득140%초과 ~160%이하	정부지원금	144천원	128천원	112천원	96천원	본인부담금	16천원	32천원	48천원	64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120%초과 ~140%이하	중위소득140%초과 ~160%이하																	
정부지원금	144천원	128천원	112천원	96천원																	
본인부담금	16천원	32천원	48천원	64천원																	

항목	내 용								
<p>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p>	<p>○ 서비스 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343 344 1452 931"> <thead> <tr> <th data-bbox="343 344 1241 398">서비스 내용</th> <th data-bbox="1241 344 1452 398">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43 398 1241 526">           1. 심리지원서비스            ① 출산 전·후 우울증 예방, 공포심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            ② 출산 전·후 신체·환경변화 등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 등         </td> <td data-bbox="1241 398 1452 526">           월2회(주1회)            (회당 5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         </td> </tr> <tr> <td data-bbox="343 526 1241 696">           2. 산모학교서비스            ① 산전교육: 태교, 출산교육, 임산부 위생교육            ② 산후교육: 신생아관리 위생교육, 베이비마사지, 이유식만들기 등            ③ 식단관리: 건강 이상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 식단관리 등         </td> <td data-bbox="1241 526 1452 696">           월2회(주1회)            (회당 5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         </td> </tr> <tr> <td data-bbox="343 696 1241 931">           3. 건강증진서비스            ① 정서안정: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한 서비스(명상·태교 교실)            ② 건강체조: 가벼운 생활스트레칭, 임산부체조            ③ 체형교정: 출산 전·후 체형관리(골반교정, 안마 등)를 위한 부가서비스            ※체형교정 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만 제공가능함.         </td> <td data-bbox="1241 696 1452 931"></td> </tr> </tbody> </table> <p>※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심리지원서비스 및 산모학교·건강증진서비스 각각의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가능</p> <p>※ 심리지원 또는 산모학교·건강증진서비스 각각 별도 제공기관을 선택가능하나 반드시 두 가지 서비스 모두 이용하여야 함 (※1개 서비스만 이용 불가)</p>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심리지원서비스 ① 출산 전·후 우울증 예방, 공포심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 ② 출산 전·후 신체·환경변화 등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 등	월2회(주1회) (회당 5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산모학교서비스 ① 산전교육: 태교, 출산교육, 임산부 위생교육 ② 산후교육: 신생아관리 위생교육, 베이비마사지, 이유식만들기 등 ③ 식단관리: 건강 이상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 식단관리 등	월2회(주1회) (회당 5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	3. 건강증진서비스 ① 정서안정: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한 서비스(명상·태교 교실) ② 건강체조: 가벼운 생활스트레칭, 임산부체조 ③ 체형교정: 출산 전·후 체형관리(골반교정, 안마 등)를 위한 부가서비스 ※체형교정 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만 제공가능함.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심리지원서비스 ① 출산 전·후 우울증 예방, 공포심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 ② 출산 전·후 신체·환경변화 등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 등	월2회(주1회) (회당 5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산모학교서비스 ① 산전교육: 태교, 출산교육, 임산부 위생교육 ② 산후교육: 신생아관리 위생교육, 베이비마사지, 이유식만들기 등 ③ 식단관리: 건강 이상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 식단관리 등	월2회(주1회) (회당 5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								
3. 건강증진서비스 ① 정서안정: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한 서비스(명상·태교 교실) ② 건강체조: 가벼운 생활스트레칭, 임산부체조 ③ 체형교정: 출산 전·후 체형관리(골반교정, 안마 등)를 위한 부가서비스 ※체형교정 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만 제공가능함.									
<p>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p>	<p>○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 이용자 대상 평가·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사전검사 의무실시)</li> <li>2단계 :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가 2개의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관 정보를 파악하여 기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지원서비스 월 2회 필수 실시</li> <li>- 산모학교서비스 또는 건강증진 서비스 월 2회 필수 실시</li> </ul> </li> <li>②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li> </ol> </li> </ul> </li> <li>3단계 : 서비스 종료 (사후검사 의무실시)</li> </ol> <p>※ 서비스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우울증 자가척도 또는 양육스트레스 척도(K-PSI)) 의무실시</p> <p>※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p>								
<p>⑥ 집단규모</p>	<p>○ 심리상담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인 원칙 (1:1 원칙)</p> <p>○ 심리상담 외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5인 이내 (1:1~1:5)</p>								
<p>⑦ 서비스 실시지역</p>	<p>○ 전 구군</p>								
<p>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p>	<p>○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또는 재가방문형(제공기관 선택)</p> <p>○ 제공기관 등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산모학교·건강증진서비스 제공기관은 분리등록 가능</li> </ul> <p>※ 1개 서비스만 진행하는 기관의 경우 반드시 서비스 명에 병기하여 표기</p>								

### 13 [190308] 생활영농기술지원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설계 지원에 따른 생활영농기술 교육 및 체험 서비스를 통하여 도심 속 전원생활의 여가, 정서안정과 귀농·귀촌을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득 : 제한없음</li> <li>○ 연 령 : 만40세~만70세(1983년생~1953년생)</li> <li>○ 가구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심 속에서 정서안정을 위한 전원생활을 설계하고 있는 가구</li> <li>2. 퇴직 후의 은퇴설계 등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가구</li> </ul> </li> </ul> <p>※ 분기별(2,5,8,10월 20,21일) 접수</p>																				
③ 제공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업을 전공한 전문학사 이상으로 1년(1,920시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li> <li>2. 농업, 특수작물, 생활농업, 도시농업에 3년(5,760시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경력사실확인서, 농산물납품확인서 등으로 경력 확인)</li> <li>3. 영농조합에 가입하고 관련사업에 2년(3,840시간) 이상 종사한 자</li> <li>4. 기타생활영농서비스 종사자로 경력 2년(3,840시간) 이상인 자</li> </ul> <p>※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준수</p>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p>○ 서비스 가격 : 180천원/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1등급</th> <th>2등급</th> <th>3등급</th> <th>4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td> <td>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td> <td>중위소득 120%초과 ~140%이하</td> <td>중위소득 140%초과~</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162천원</td> <td>144천원</td> <td>132천원</td> <td>108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18천원</td> <td>36천원</td> <td>48천원</td> <td>72천원</td> </tr> </tbody> </table> <p>○ 서비스 제공기간 : 3개월 (서비스 신청 후 5개월 내 서비스 이용 가능)</p>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	중위소득 120%초과 ~140%이하	중위소득 140%초과~	정부지원금	162천원	144천원	132천원	108천원	본인부담금	18천원	36천원	48천원	72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	중위소득 120%초과 ~140%이하	중위소득 140%초과~																	
정부지원금	162천원	144천원	132천원	108천원																	
본인부담금	18천원	36천원	48천원	72천원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 서비스 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서비스 내용</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1. 도심 전원환경 조성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원주택 생활환경 조성 : 경계목, 담쟁이, 계절초 등 수목 설치</li> <li>② 여가생활을 위한 텃밭 조성 : 상자텃밭, 옥상텃밭, 농장텃밭 등</li> <li>③ 생활영농장비 사용교육 : 각종 영농 자재·장비 및 도구 사용 요령</li> </ul> </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월3회(주1회) (회당 6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         </td> </tr> <tr> <td>           2. 농작물, 수목 및 원예 관리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천연비료·약품 생산 및 사용교육 : 생활음식 등을 활용한 퇴비, 유기비료, 천연농약</li> <li>② 원예관리 과정 : 정서를 함양하는 화초, 수목 등 원예관리 과정</li> <li>③ 과수목 관리 과정 : 여가생활을 증진하는 전정작업, 접붙이기 등 실습·관리 과정</li> <li>④ 관상용 화초·토종작물 재배 : 심신 안정을 북돋는 관상용 화초, 토종 작물</li> </ul> </td> </tr> <tr> <td>           3.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반려동물 습성과 관리 방법</li> <li>② 집 지키는 가축 사육 및 관리방법 (거위, 오리, 닭 등)</li> </ul> </td> <td></td> </tr> <tr> <td>           4. 생활영농 심화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산나물, 야생버섯, 찻 등 야생초 교육 및 채취</li> <li>② 버섯재배, 건강 차 생산 실습</li> <li>③ 향토(저장) 음식 생산과정 (두부, 콩발효, 김치, 장아찌 등) 등 농촌문화 체험</li> </ul>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월1회(주1회) (회당 90분)         </td> </tr> </tbody> </table> <p>※ 가격규제 완화 사업 : 기준가격 대비 20% 상향, 216천원 까지 가능 (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p>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도심 전원환경 조성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원주택 생활환경 조성 : 경계목, 담쟁이, 계절초 등 수목 설치</li> <li>② 여가생활을 위한 텃밭 조성 : 상자텃밭, 옥상텃밭, 농장텃밭 등</li> <li>③ 생활영농장비 사용교육 : 각종 영농 자재·장비 및 도구 사용 요령</li> </ul>	월3회(주1회) (회당 6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농작물, 수목 및 원예 관리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천연비료·약품 생산 및 사용교육 : 생활음식 등을 활용한 퇴비, 유기비료, 천연농약</li> <li>② 원예관리 과정 : 정서를 함양하는 화초, 수목 등 원예관리 과정</li> <li>③ 과수목 관리 과정 : 여가생활을 증진하는 전정작업, 접붙이기 등 실습·관리 과정</li> <li>④ 관상용 화초·토종작물 재배 : 심신 안정을 북돋는 관상용 화초, 토종 작물</li> </ul>	3.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반려동물 습성과 관리 방법</li> <li>② 집 지키는 가축 사육 및 관리방법 (거위, 오리, 닭 등)</li> </ul>		4. 생활영농 심화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산나물, 야생버섯, 찻 등 야생초 교육 및 채취</li> <li>② 버섯재배, 건강 차 생산 실습</li> <li>③ 향토(저장) 음식 생산과정 (두부, 콩발효, 김치, 장아찌 등) 등 농촌문화 체험</li> </ul>	월1회(주1회) (회당 90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도심 전원환경 조성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원주택 생활환경 조성 : 경계목, 담쟁이, 계절초 등 수목 설치</li> <li>② 여가생활을 위한 텃밭 조성 : 상자텃밭, 옥상텃밭, 농장텃밭 등</li> <li>③ 생활영농장비 사용교육 : 각종 영농 자재·장비 및 도구 사용 요령</li> </ul>	월3회(주1회) (회당 6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농작물, 수목 및 원예 관리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천연비료·약품 생산 및 사용교육 : 생활음식 등을 활용한 퇴비, 유기비료, 천연농약</li> <li>② 원예관리 과정 : 정서를 함양하는 화초, 수목 등 원예관리 과정</li> <li>③ 과수목 관리 과정 : 여가생활을 증진하는 전정작업, 접붙이기 등 실습·관리 과정</li> <li>④ 관상용 화초·토종작물 재배 : 심신 안정을 북돋는 관상용 화초, 토종 작물</li> </ul>																					
3.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반려동물 습성과 관리 방법</li> <li>② 집 지키는 가축 사육 및 관리방법 (거위, 오리, 닭 등)</li> </ul>																					
4. 생활영농 심화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산나물, 야생버섯, 찻 등 야생초 교육 및 채취</li> <li>② 버섯재배, 건강 차 생산 실습</li> <li>③ 향토(저장) 음식 생산과정 (두부, 콩발효, 김치, 장아찌 등) 등 농촌문화 체험</li> </ul>	월1회(주1회) (회당 90분)																				

항목	내 용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단계 : 이용자 대상 평가·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사전검사 의무실시)</li> <li>2. 2단계 :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li> <li>②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li> </ol> </li> <li>3. 3단계 : 서비스 종료 (사후검사 의무실시)</li> </ol> </li> <li>※ 서비스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영농기술인지도 또는 생활만족도) 의무실시</li> <li>※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li> </ul>
⑥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0인 이내 (1:1~1:10)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

## 14 [990308] 성인심리지원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장년 대상자에게 심리정서지원으로 심리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과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만 35세 이상(1988년생)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가족이음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선정기준 : 1. 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 정신과) 진단서 2. 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3. 공공기관 또는 공공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유관기관(복지관등) 추천서 ○ 우선순위 : 1. 정신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진료 받은 이력이 있는 자(진료확인서 제출)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폭행, 학대, 방임, 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는 수시접수 가능 (희망복지지원단, 지역내 사회복지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추천서 첨부)																				
③ 제공 인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준수	1.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2에 의한 “임상심리사”, “청소년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2급 이상),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교사, 국가전문자격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취득 후 성인상담 실무경력 1년(1,920시간) 이상인 자 2. 심리학과, 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등 심리 및 상담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심리, 상담 및 치료분야 관련 자격증 취득 후 성인상담 실무경력 2년(3,840시간) 이상인 자 3. 심리학과, 상담학과, 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등 심리 및 상담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심리, 상담 및 치료분야 관련 자격증 취득 후 성인상담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실무경력 6개월(960시간) 이상인 자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200천원/월 <table border="1" data-bbox="330 1285 1482 1525"> <thead> <tr> <th>구분</th> <th>1등급</th> <th>2등급</th> <th>3등급</th> <th>4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 <td>중위소득120%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d> <td>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td> <td>중위소득140%초과~160%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180천원</td> <td>160천원</td> <td>140천원</td> <td>120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20천원</td> <td>40천원</td> <td>60천원</td> <td>80천원</td> </tr> </tbody> </table> ※가격규제 완화사업 : 기준가격 대비 20% 최대 상향, 240천원까지 가능 (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 ○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 재판정1회(신청시 서류와 동일)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120%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중위소득140%초과~160%이하	정부지원금	180천원	160천원	140천원	12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40천원	60천원	80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120%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중위소득140%초과~160%이하																	
정부지원금	180천원	160천원	140천원	12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40천원	60천원	80천원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table border="1" data-bbox="341 1675 1453 1982"> <thead> <tr>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1.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①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②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③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④ 진로 및 자기개발 향상</td> <td>주1회/월4회 (회당 5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td> </tr> <tr> <td>2. 가족상담 진행</td> <td>필요 시 (회당 50분)</td> </tr> </tbody> </table>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①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②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③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④ 진로 및 자기개발 향상	주1회/월4회 (회당 5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가족상담 진행	필요 시 (회당 50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①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②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③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④ 진로 및 자기개발 향상	주1회/월4회 (회당 5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가족상담 진행	필요 시 (회당 50분)																				

항목	내 용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단계 : 신청 된 대상자 욕구 조사 (사전검사 의무실시)</li> <li>2.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li> <li>3. 3단계 :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평가 (사후검사 의무실시)</li> </ol> </li> <li>※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 의무 실시</li> <li>○ 사전·사후 검사 심리평가도구               <p style="margin-left: 20px;">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HTP, KFD, SCT, BDI, STAI, PTSD척도, Rorschach 검사 등 검사도구 중 한가지 이상 활용하되, HTP, KFD, SCT 등 주관적 검사를 활용할 경우,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객관적 검사를 추가 진행하여야 함)</p> </li> </ul>
⑥ 집단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인 원칙 (1:1) 단, 가족상담 진행 시에는 이용자 가족까지 대상 인원으로 함</li> </ul>
⑦ 서비스 실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구·군</li> </ul>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li> </ul>

## 15 [990408] 가사지원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p>맞벌이, 한부모 등 자녀양육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가사부담을 경감시켜 노동시장의 일과 가정의 돌봄과 가사등을 양립하도록 지원하여 가족기능 강화</p>																												
② 서비스 대상	<p>○ 소 득 : 제한 없음</p> <p>○ 연 령 : 제한 없음</p> <p>○ 선정기준 : -만15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부 또는 모) -만15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는 취업한 한부모 가정(부 또는 모)</p> <p>※ 한부모 가정 증빙서류: 한부모 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p> <p>※ 아동 연령 기준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적용연령 출생연도 기준표 적용</p> <p>○ 우선순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2년 선정자(미이용자-이용횟수 적은 자)</li> <li>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부터 추천, 의뢰된 자</li> <li>만12세 이하 자녀와 거주(생활)하는 취업한 한부모 가정</li> <li>만12세 이하 자녀와 거주(생활)하는 맞벌이 가정</li> </ol> <p>※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자녀의 나이(적은 순), 소득수준 순</p> <p>○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자체 가사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 이용자</p>																												
③ 제공 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격기본법 제 17조에 따른 “가사관리사”, “가정관리사” 등 관련 민간자격 취득자</li> <li>노인복지법 제39조2에 따른 “요양보호사”자격증 소지자</li> <li>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자</li> <li>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자</li> <li>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li>기타 구·군청장이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인정하는 자</li> </ol>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준수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p>○ 서비스 가격 : 220천원/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1등급</th> <th>2등급</th> <th>3등급</th> <th>4등급</th> <th>5등급</th> <th>6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 <td>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d> <td>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td> <td>중위소득 140%초과~160%이하</td> <td>중위소득 160%초과~180%이하</td> <td>중위소득 180% 초과</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198천원</td> <td>176천원</td> <td>154천원</td> <td>132천원</td> <td>110천원</td> <td>88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22천원</td> <td>44천원</td> <td>66천원</td> <td>88천원</td> <td>110천원</td> <td>132천원</td> </tr> </tbody> </table> <p>○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 재판정1회</p>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중위소득 140%초과~160%이하	중위소득 160%초과~180%이하	중위소득 180% 초과	정부지원금	198천원	176천원	154천원	132천원	110천원	88천원	본인부담금	22천원	44천원	66천원	88천원	110천원	132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중위소득 140%초과~160%이하	중위소득 160%초과~180%이하	중위소득 180% 초과																							
정부지원금	198천원	176천원	154천원	132천원	110천원	88천원																							
본인부담금	22천원	44천원	66천원	88천원	110천원	132천원																							

<p>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p>	<p>○ 서비스 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343 241 1452 712"> <thead> <tr> <th data-bbox="343 241 1241 300">서비스 내용</th> <th data-bbox="1241 241 1452 300">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43 300 1241 712">           1. 욕구상담(분기 1회)            2. 단위서비스            ① 청소: 이용자가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② 세탁: 세탁 및 세탁물수거, 다림질            ③ 정리정돈: 쓰레기 배출, 내부 정리, 옷장, 서랍장, 책장 등            ④ 취사 서비스: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하기, 설거지             ※불가 서비스            - 가족행사, 김장, 제사상 차리기, 장보기            - 소요시간이 긴 커튼 및 이불빨래, 계절옷 정리            - 화장실/베란다 물때, 창틀 청소 등 묵은 청소 불가         </td> <td data-bbox="1241 300 1452 712" style="text-align: center;">           주1회/ (회당 3시간)         </td> </tr> </tbody> </table>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욕구상담(분기 1회) 2. 단위서비스 ① 청소: 이용자가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② 세탁: 세탁 및 세탁물수거, 다림질 ③ 정리정돈: 쓰레기 배출, 내부 정리, 옷장, 서랍장, 책장 등 ④ 취사 서비스: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하기, 설거지  ※불가 서비스 - 가족행사, 김장, 제사상 차리기, 장보기 - 소요시간이 긴 커튼 및 이불빨래, 계절옷 정리 - 화장실/베란다 물때, 창틀 청소 등 묵은 청소 불가	주1회/ (회당 3시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욕구상담(분기 1회) 2. 단위서비스 ① 청소: 이용자가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② 세탁: 세탁 및 세탁물수거, 다림질 ③ 정리정돈: 쓰레기 배출, 내부 정리, 옷장, 서랍장, 책장 등 ④ 취사 서비스: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하기, 설거지  ※불가 서비스 - 가족행사, 김장, 제사상 차리기, 장보기 - 소요시간이 긴 커튼 및 이불빨래, 계절옷 정리 - 화장실/베란다 물때, 창틀 청소 등 묵은 청소 불가	주1회/ (회당 3시간)				
<p>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p>	<p>○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 상담을 통해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환경, 이용 욕구 파악, 계약 내용 전반에 대한 구두 합의 및 서비스 제공 관련 협조 사항 안내        * 이용자 수칙 안내 필수        (이용자와 제공인력은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존중과 배려하는 문화 필요)</li> <li>2단계 : 제공인력 매칭, 서비스 제공계획서(서비스 우선순위 및 시간) 및 계약서작성        * 서비스 제공 시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 필수 포함</li> <li>3단계 :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필요시 제공기관 간 협의하여 욕구 파악·연계)</li> <li>4단계 :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와 필요시 서비스 제공 계획 조정</li> <li>5단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제공기관)</li> </ol>				
<p>⑥ 집단규모</p>	<p>○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인(가정) 원칙 (1:1 원칙)</p>				
<p>⑦ 서비스 실시지역</p>	<p>○ 전 구군</p>				
<p>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p>	<p>○ 서비스 형태 : 재가방문형</p>				
<p>⑨ 제출서류</p>	<p>※<b>맞벌이가정</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임금근로자: 제출서류 없음(시스템에서 건강보험료 조회)</li> <li>2.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아래의 서류 중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금액증명원</li> <li>- 영업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금신고내역 등 제출 어려운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자료</li> </ul> </li> </ol> <p>※<b>한부모가정</b>: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p> <p>※<b>육아휴직자</b>: 육아휴직 증명서</p>				

## 16 [990301]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항목	내용																
① 목적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득 : 제한없음</li> <li>○ 연 령 : 만 19세 ~ 만 34세 이하(2004년생~1989년생)</li> <li>○ 우선순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확인서) 및 보호연장아동(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li> <li>2.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연계 의뢰서)</li> </ol> </li> <li>※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일반 청년의 경우 증빙서류 없음</li> </ul>																
③ 제공기관 등록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기준 : 기관장 1인(의료인 또는 제공인력 요건을 갖춘 자), 관리책임 1인(기관장과 중복 가능), 상담실 33㎡, 제공인력(기관장이 대체가능), 제공인력을 갖춘 법인</li> <li>※ A형 서비스만 제공할 경우 제공인력 2명 충족, B형은 제공인력 1명, 기관장은 제공인력 겸직 가능</li> <li>※ B형 자격기준을 갖춘 인력이 A형과 B형 모두 제공할 경우, 상담실 면적은 12㎡ 구비 (임차, 대여 시 계약서 사본 등 관련증빙 필요)</li> <li>○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 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li> <li>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li> </ul> </li> </ul>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가격(회당)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A형</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B형</th> </tr> </thead> <tbody> <tr> <td>서비스 가격</td> <td>60,000원</td> <td>70,000원</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54,000원</td> <td>63,000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6,000원</td> <td>7,000원</td> </tr> </tbody> </table> </li> <li>- [A형] 심리 문제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청년</li> <li>- [B형]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청년</li> <li>○ 서비스 제공기간 : 3개월 (재판정 통해 최대 12개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주기 제한 없이 3개월간 총 10회 제공(단. 바우처 시스템상 1일 최대 1회 결제 가능)</li> <li>※ 서비스 종료시점과 관계없이 재판정은 선정일 3개월 이후 가능</li> <li>※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 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li> </ul> </li> </ul>	구분	A형	B형	서비스 가격	60,000원	70,000원	정부지원금	54,000원	63,000원	본인부담금	6,000원	7,000원				
구분	A형	B형															
서비스 가격	60,000원	70,000원															
정부지원금	54,000원	63,000원															
본인부담금	6,000원	7,000원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서비스 종류</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서비스 내용</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제공 시간</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제공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사전·사후검사</td> <td>·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td> <td>90분</td> <td>사전·사후 각 1회</td> </tr> <tr> <td>서비스제공 (1:1 원칙)</td> <td>·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불안,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td> <td>회당 50분</td> <td>총8회</td> </tr> <tr> <td>종결상담</td> <td>·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서비스 대상자 중 <b>고위험군</b>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td> <td>-</td> <td>1회</td> </tr> </tbody> </table> </li> <li>※ 재판정 선정 후 사전검사는 최초상담의 사후검사로 같음하여 상담서비스로 제공 가능</li> </ul>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제공 시간	제공 횟수	사전·사후검사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서비스제공 (1:1 원칙)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불안,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50분	총8회	종결상담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서비스 대상자 중 <b>고위험군</b> 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1회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제공 시간	제공 횟수														
사전·사후검사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서비스제공 (1:1 원칙)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불안,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50분	총8회														
종결상담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서비스 대상자 중 <b>고위험군</b> 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1회														

<p>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p>	<p>○ 서비스 제공절차          제공기관 등록·상담 → 제공계약서 작성 → 주된 문제 및 욕구파악(사전검사)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사후검사 → 종결상담 및 피드백 제공</p>
<p>⑥ 집단규모</p>	<p>○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인 원칙(1:1)</p>
<p>⑦ 서비스 실시지역</p>	<p>○ 전 구군</p>
<p>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p>	<p>○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 등록절차 :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따라 등록          ○ 신청 절차          -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서비스 유형(A, B) 선택하여 신청 후 이용자 선정 및 제공기관 안내</p> <p>○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p> <p>1. 경력산정기준 : 각 서비스 별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력만 인정          2. 경력기간 산정          ① 시간제근무경력으로 인정          - 1년 : 1,920시간, 2년 : 3,840시간, 3년 : 5,760시간, 4년 : 7,680시간, 5년 : 9,600시간          ② 시간단위(주단위, 월단위 등) 근무시간 명시(전체 경력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          ③ 교육, 상담, 프로그램지원 등 실무만 인정되며, 보조진행, 봉사활동, 단순행정업무 등은 경력인정 불가 (사회보험가입증명서 제출-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중 1개 이상)          3.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①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포함), 인적사항, 근무기간 및 시간          (ex) 2023.01.01.~2023.03.31. 주3회 일3시간, 총117시간, 근무내용(구체적 명시)          ※ 시군구는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          ※ 제공기관 자체경력의 경우 서비스 경력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록지 등 증빙서류 첨부          ※ 허위 경력으로 확인될 경우, 제공인력 등록 취소</p>
<p>⑨ 제출서류</p>	<p>1.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확인서) 및 보호연장아동(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          2.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연계 의뢰서)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일반 청년의 경우 증빙서류 없음          ※재판정 시 소견서 제출</p>

## V. 서비스 신청 시 필수 유의사항

### 1. 이용자 필수 안내사항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이용자가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무료서비스는 없음)
- 대상자 확정 통보 후,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기관에 연락해야 함.(5개 구군 이용가능)
-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시** 마다 반드시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여야 하며, 바우처카드 분실이외의 미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을 안내
- 선정된 이후에는 서비스를 받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신청 불가
- 서비스 이용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2개월간 서비스 미이용시 서비스 중단
- 이용자 중복신청 불가 사업

사업명	중복신청 불가 사업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자녀언어발달사업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사랑나눔안마서비스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건강증진 맞춤형운동 지도서비스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가족이음서비스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가족이음서비스,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 사랑나눔안마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가족이음서비스,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 2. 명칭변경 사업 안내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업별로 각각 평생 1회(일부 사업 1회 정도 재판정 가능) 서비스 이용가능하나, 서비스 명칭이 변경되면서 동일 서비스를 2번 이상 수혜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용자 서비스 내역조회 시 명칭변경 사업에 대해 유의해야함.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연도)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2013년)
저소득 노인의 문화활동(전통무용)프로그램	실버 맞춤 문화활동 서비스 (2014년)
장애인 직업능력 발달지원서비스	직업능력발달서비스 (2014년)
결혼이민자와함께하는 울주아동 영어홈스쿨 글로벌아동홈스쿨, 아동 청소년 인지잠재력 향상 사업 푸른희망리더만들기, 울주아동명품과학교실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2016년)
사랑나눔안마치료서비스	사랑나눔안마서비스 (2017년)
맞춤형 재활보조기구 렌탈사업, 장애인보조기구 렌탈사업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사업 (2017년)
산모생활건강지원서비스	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 (2018년)
고령자 소외예방 서비스, 실버 생활건강 지원서비스	실버 심리지원 서비스 (2019년)
실버 심리지원 서비스	어르신 생기발랄(2023년)
부모학교 서비스	가족이음 서비스(2023년)

## **첨 부 - 서비스 관련 참고서식**

# 첨부1. 사업별 증빙서류 목록

사업명	증빙서류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 추적검사요망, 심화평가권고, 지속관리필요, 정밀평가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li> <li>  <b>※종합판정이 ‘양호’ 또는 ‘주의’ 일 경우 신청 불가</b></li> <li>- 신체계측 10백분위(%) 이내인 영유아</li> <li>  <b>※ 발달 차수에 해당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만 가능함. (p57영유아건강검진시기 참조)</b></li> <li>  <b>※ 심화검사결과지에 발달지연, 발달경계 판정을 받은아동은 1순위로 선정 (영유아건강검진 결과서 + 심화검사결과지)</b></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①~④ 전체 서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진단서 (혹은 소견서)</li> <li>  <b>※ 소견서의 경우, 반드시 검사자의 자격번호와 성명이 기재되어야 함.</b></li> <li>②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소견서 요약본 (p70 지정양식 사용)</li> <li>③ 전문가보고 검사 결과지 1부 (1년)</li> <li>④ 부모보고 검사 결과지 1부 (6개월)</li> <li>-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각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li> <li>  <b>※ 부모보고 검사도구 : K-CBCL, K-ARS, RCMAS, -PRC, -CYP, PRES/ 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 중 하나 필수 선택</b></li> <li>  <b>※ 전문가보고 검사도구 : K-WISC-V (WPPSI, WAIS포함) 지능검사(K-WISC 전버전 가능), K-ABC2(K-ABC)중 하나 필수 활용.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b></li> <li>  <b>※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 상담사, 전문상담사(교사))가 수행 (p47 참조)</b></li> <li>◆ <b>재판정 경우</b></li> <li>  : ①~④와 ⑤ 사전·사후검사지 및 결과보고서 ⑥ 서비스 종결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전문가보고 검사도구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b>2년</b>까지 유효 함.</li> <li>  <b>※ 소아정신과, 정신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자 우선순위적용 (진료확인서 제출)</b></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어르신생기발달 (구.실버심리지원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보건전문요원1급 소견서, 보건소장 추천이 있는 경우</li> <li>② * <b>치매(치매간이선별검사 MMSE-DS, CDR, ADL, 7분치매검사)</b></li> <li>  * <b>우울증(노인우울척도 GDS-K(19점 이상), Beck우울척도(16점 이상), 한국형단축노인우울척도 GDSSF-K(6점 이상), 정신신경증상 척도)</b></li> <li>  * <b>Beck자살생각 척도(17점 이상), 한국판지각된스트레스척도 PSS-K(14점 이상) 위의 척도 중 증상에 맞춰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신청 시 검사 결과지 필수 제출)</b></li> <li>③ 노인 폭행·학대·방치 및 사회적 고립 등에 따른 긴급 심리지원 대상자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자)</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사랑나눔안마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각종 부상사고로 인한 재활치료대상자 :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중 택 1</li> <li>  <b>※ 진단서 및 소견서에 ‘부상사고로 인한 재활필요자’ 명시되어 있어야 함.</b></li> <li>② 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li> <li>③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자 :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 중 제출</li> <li>④ 임부 :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중 제출</li> </ul>

<p>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p>	<p>①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 장애인등록증          ② 척수장애 및 근위축증 아동·청소년 :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제출          ※ 단 6세 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등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          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p>
<p>건강증진 맞춤형운동 지도서비스</p>	<p>① 신부전, 심부전, 고혈압, 당뇨, 갑상선, 고지혈증 질환자 :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제출          ②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제출          ③ 12주 이상 입부 :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중 제출          ④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⑤ 만 7세~65세 미만 중 심신의 문제로 운동을 요하는 자 :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보건소장 추천서 중 제출          ⑥ 보건소 및 병원에서 체지방(인바디 등) 측정결과 경도비만 이상(체지방률-여성:28%이상,          남성:20%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검사결과지 제출</p>
<p>직업능력발달서비스</p>	<p>① 경력단절 중인 자 : 4대 보험 중 1개 보험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경력증명서          ② 구직활동중인 자 : 워크넷 등의 구직활동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p>
<p>가족이음 서비스 (구.부모학교 서비스)</p>	<p>① <b>(고위험)</b>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          정신과,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가 있는 자          2. <b>(잠재)</b>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제공기관          소견서가 있는 자</p>
<p>임산부생활건강 지원서비스</p>	<p>① 출산 전 : 임신 12주 이상 증명할 수 있는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② 출산 후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울증 고위험군인 자만 1회 재판정 신청 가능</p>
<p>성인심리지원서비스</p>	<p>① 의사진단서: 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진단서 (정신과 및 신경정신과)          ② 임상심리사소견서 : 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견서          ③ 공공기관장 또는 공공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유관기관장(복지관등) 추천서          ※정신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자 우선순위적용(진료확인서 제출)</p>
<p>가사지원서비스</p>	<p>① <b>맞벌이가정</b>          1.임금근로자: 제출서류 없음(시스템에서 건보료 조회)          2.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아래의 서류 중 1부          - 소득금액증명원          - 영업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금신고내역 등 제출 어려운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자료          ② <b>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b>          ③ <b>육아휴직자: 육아휴직 증명서</b></p>
<p>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p>	<p>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확인서) 및 보호연장아동(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연계 의뢰서)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일반 청년의 경우 증빙서류 없음</p>

## 첨부2. 이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욕구판단 가능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현황

(기준:2023.8.7.)

구분	기관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공인력명	자격분야
중구 (12개)	공감심리상담센터	중구 화합로 492-1, 2층 (복산동) ☎ 293-8181	박미영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더,봄미술심리상담센터	중구 태화로 220,3층(태화동) ☎ 245-8077	김건희	청소년상담사2급
	로템언어심리치료센터	중구 번영로 457 (복산동) ☎ 296-8275	이경자	임상심리사2급
	반구킨더창의센터	중구 반구정2길 22 2층(반구동) ☎ 294-6305	최용건	정신건강임상심리사1급
	울산숲심리상담코칭센터	중구 구루미2길 8 (다운동) ☎ 225-7455	이창향	청소년상담사2급
			조예림	임상심리사2급
	이름아동발달센터	중구 명륜로 75,4층(우정동) ☎245-5425	이경남	임상심리사2급 청소년상담사2급
	이주희발달심리상담센터	중구 화합로 507 (복산동) ☎ 268-8557	김정향	임상심리사2급
	세움아동청소년발달센터	번영로 542, 미소빌딩 3층 (반구동) ☎ 296-0175	김은실	임상심리사2급
	김스아동발달센터	중구 증가17길 52, 202호(서동) ☎ 295-7582	최진혁	임상심리사2급
	태화아동가족발달연구소	중구 엽포로 26, 1동 203호 (반구동) ☎ 297-8203	김유미	청소년상담사2급
			이정희	임상심리사2급 청소년상담사2급
더공감소아청소년발달센터	중구 증가25길 2-26, 301호 (장현동) ☎ 298-5203	김윤경	임상심리사2급	
커리어와케어(Career&Care) 참솔진로집중상담센터	중구 증가로 651 굿프라임 2동 302호 ☎ 272-5518	유혜숙	청소년상담사2급 전문상담사2급	
남구 (13개)	강민정아동가족상담센터	남구 수암로 138, 803호 (아음동, 울산타임스퀘어) ☎ 256-1947	강민정	청소년상담사2급
	도담심리상담센터	남구 번영로 181, 4층 (달동, 성원빌딩) ☎ 267-2607	원주영	임상심리사2급
			진금희	임상심리사2급 청소년상담사2급
	마인드풀모닝 임상심리상담센터	남구 월평로199번길 16, 103호 (삼산동) ☎ 010-8674-0397	김민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라임아동발달센터	남구 삼산중로 56,11층(삼산동, UM빌딩) ☎227-4579	박선희	임상심리사2급	

	아트렌오감염재연구소	남구 삼산로 145 ☎ 275-1121	이은정	청소년상담사2급
			선혜민	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
	예일아동청소년상담센터	남구 팔동로151번길 12, 2층 (신정동, 새움하이파크) 남구 중앙로 164, 3층 (달동, 굿마인드) ☎ 266-3288	조석문	임상심리사2급
			나솔이	
			조비안	
			양희경	
	울산가족미술치료연구소	남구 옥현로 119, 1404호(무거동)	문서현	임상심리사2급
	울산미술치료센터	남구 돌길로 255, 5층 (삼산동) ☎ 269-7750	이윤희	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
			박혜정	임상심리사2급
	울산심리상담연구소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134 (무거동, 삼흥메디어스빌딩 8층) ☎ 277-3457	임영	청소년상담사2급
조혜원아동부모상담센터	남구 봉월로 24 (신정2동 1211-4) ☎ 266-8603	조혜원	임상심리사2급 청소년상담사2급	
		김경옥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2급	
		한길자	임상심리사2급	
		박현미	청소년상담사2급	
청심심리상담연구소	남구 대공원입구로9번길 5, 2층 (옥동) ☎ 267-1442	박은선	임상심리사2급	
		박난경	임상심리사2급	
해봄학습심리상담연구소	남구 왕생로124번길 3, 2층 (달동) ☎ 256-4511	김민호	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	
미래언어심리발달센터	남구 수암로 121, 4층 미래언어심리발달센터 ☎ 713-8275	권오신	청소년상담사2급 임상심리사2급	
동구 (6개)	(사)동울산새마을금고 느티나무복지재단 동울산아동청소년발달센터	동구 바드래길 93, 3층 (전하동) ☎ 232-5170 / 010-8351-5170	안지영	정신건강임상심리사1급
			엄혜생	임상심리사2급
	마미아떼 전하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33, 103호 (전하동, 삼전아이필하모니) ☎ 227-1124	김선옥	임상심리사2급
	울산아동청소년상담센터	동구 남목16길 4, 302호 (동부동) ☎ 251-1004	이일레	임상심리사2급
	태화아동가족발달연구소 동구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32 ☎ 235-8203	김 부	임상심리사2급
	채움언어심리발달센터	동구 바드래1길 55, 301/302 ☎ 010-4491-4691	박혜정	임상심리사2급
	정지언아동청소년발달지원센터	동구 꽃바위2나길 20, 1층 ☎ 236-2940	이미환	임상심리사2급
배소연			임상심리사2급	
북구 (10개)	강한나아동발달센터	북구 달천로 9, 201호 (천곡동) ☎ 293-1175	강한나	임상심리사2급

	도원예일언어심리센터	북구 상방로 106, 2층 (연암동) ☎ 283-1999	전유경	청소년상담사2급 임상심리사2급
			권효주	임상심리사2급
	라파아동발달센터	북구 신천로 83 에이치프라자 202호 ☎ 295-7577	이정원	임상심리사2급
	송정말놀이아동발달센터	북구 화산4길 16, 301호 (화봉동) ☎ 289-8935	양혜미	정신건강임상심리사1급
			유미옥	임상심리사2급
	인애아동발달센터	북구 호계로 272, 5층 (호계동) ☎ 282-2827	박진희	임상심리사2급 청소년상담사2급
	자람아동발달센터	북구 신천로 55-21, 하람타운 302호 (신천동) ☎ 291-1175	오정금	청소년상담사2급
			김난희	임상심리사2급
	희린아동청소년발달센터	북구 박상진 12로 11, 506호 ☎292-9692	최지원	임상심리사2급
	칸아트창의센터	북구 화동로 16, 3층 (화봉동, 두진빌딩) ☎ 010-3301-7757	김경숙	청소년상담사2급
남성희소아청소년발달센터	북구 신답로 프리지아 3층 ☎ 286-0675	김은영	임상심리사2급	
강동심리상담센터 마인드뷰	북구 강동산하3로 37 승민빌딩 302 ☎ 298-5100	정혜영	임상심리사2급	
울주군 (12개)	남창아트스쿨	울주군 온양읍 대운길44 2층 (대안리) ☎ 238-0125	김미정	임상심리사2급
			정은우	임상심리사2급
	대연재활심리센터	울주군 범서읍 점촌5길 52 A동 202호 ☎ 264-0557	강소정	임상심리사
	맘&샘발달센터	울주군 범서읍 대동길 23, 3층 303호 (천상리, 문수애시앙 상가) ☎ 247-8400	박현경	임상심리사2급
			문가인	정신보건임상심리사1급
	아이공감아동가족센터	울주군 온양읍 화산발리로 752-1 (대안리) ☎ 932-9932	나희정	임상심리사2급
	아이원언어발달센터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72 대우빌딩 2층(구영리) ☎ 211-2755	윤광희	임상심리사2급
	아이CAN언어심리발달센터	울주군 온산읍 영남5길 3, 201호 ☎ 238-3543	도춘아	임상심리사2급
			조원량	전문상담교사 1급
	온(On)아동발달센터	울주군 범서읍 장검1길 59, 4층(범서읍) ☎ 247-2022	나 효	임상심리사2급
			주수은	임상심리사2급
			이민정	임상심리사2급
도란도란심리상담센터	울주군 언양읍 방천5길 30, 201호 (서부리, 조은빌딩) ☎ 264-2331	이태겸	임상심리사2급	

우리아동발달센터	울주군 언양읍 현양길 175, 4층 (서부리) ☎ 716-2360	박현경	임상심리사2급
굿모닝언어심리발달센터	울주군 삼남읍 울산역로 274 동문근로빌 301동 210호 ☎ 254-8988	진민경	임상심리사2급
아이톡발달센터	울주군 범서읍 대동길23 303호 ☎ 247-8400	김나희	임상심리사2급
행복한마음심리상담센터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86, 301호 (구영리, GM프라자) ☎ 211-7534	황은진	청소년상담사2급
		장은진	임상심리사2급
		김주형	임상심리사2급
		권재희	청소년상담사2급
		이지은	임상심리사2급
		최은정	임상심리사2급

※ 위 검사가능 기관 및 제공인력은 2023. 8. 7. 기준으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파악한 현황이며, **공지 기관 외 관련 전문가가 있는 병원은 검사 가능**

### 첨부3. 사랑나눔 안마서비스 질병분류코드 상세목록 (G, M, I 및 R81, E10~15)

대분류	소분류	질환명	비고
G	G	<b>신경계통의 질환</b>	
	G00-G09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	
	G10-G14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G20-G26	추체외로 및 운동 장애	
	G30-G32	신경계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35-G37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질환	
	G40-G47	우발적 및 발작적 장애	
	G50-G59	신경, 신경근 및 신경총 장애	
	G60-G64	다발신경병증 및 말초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G70-G73	신경근접합부 및 근육의 질환	
	G80-G83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증후군	
G90-G99	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M	M	<b>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b>	
	M00-M25	관절병증	
	M30-M36	전신결합조직장애	
	M40-M54	등병증	
	M60-M79	연조직장애	
	M80-M94	골병증 및 연골병증	
M95-M99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기타 장애		
I	I	<b>순환계통의 질환</b>	
	I00-I02	급성 류마티스열	
	I05-I09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	고혈압성 질환	
	I20-I25	허혈심장질환	
	I26-I28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	기타 형태의 심장병	
	I60-I69	뇌혈관질환	
	I70-I79	동맥, 세동맥 및 모세혈관의 질환	
	I80-I8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정맥, 림프관 및 림프절의 질환	
I95-I99	순환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장애		
R81	R81	<b>당뇨</b>	
E10~ E15	E10	1형 당뇨병	
	E11	2형 당뇨병	※E11.9 포함
	E12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	상세불명의 당뇨병	
	E15	비당뇨병성 저혈당성 혼수	

## 첨부4. 건강증진 맞춤형운동 지도서비스 질병분류코드 상세목록 (신부전, 심부전, 고혈압, 당뇨, 갑상선, 고지혈증)

대분류	소분류	질환명	비고
신부전	N17-19	신부전	
	N99.0	비뇨생식계통의 처치 후 장애 (처치 후 신부전)	
	I12.0	신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신장병	
	I13.1	신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I13.2	(울혈성) 심부전 및 신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O08.4	유산, 자궁외임신 및 기태임신에 따른 신부전	
	O90.4	분만후 급성 신부전	
	P96.0	선천성 신부전	
심부전	I50	심부전	
	I50.0	울혈성 심부전	
	I50.03	우심부전(우심실부전)	
	I50.04	수축기능부전을 동반한 울혈성 심부전	
	I50.0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울혈성 심부전	
	I50.1	좌심실부전	
	I50.9	상세불명의 심부전	
	I09.9	상세불명의 류마티스심장병(류마티스 심부전)	
	I11.0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I13.0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I13.2	(울혈성) 심부전 및 신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I97.1	심장수술후의 기타 기능장애(심부전)	
	O29.1	임신중 마취로 인한 심부전	
	O74.2	진통 및 분만중 마취로 인한 심부전	
	O75.4	달리 명시되지 않은 분만을 포함한 제왕절개 또는 기타 산과수술 및 처치에 따른 심부전	
O89.1	산후기중 마취로 인한 심부전		
고혈압	I10-I15	고혈압성 질환	
	I27.0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I27.2	기타 이차성 폐동맥 고혈압	
	K76.6	문맥고혈압	
	O10-16	임신,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O12제외
당뇨	R81	당뇨	
	E10	1형 당뇨병	
	E11	2형 당뇨병	
	E12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	상세불명의 당뇨병	
	E15	비당뇨병성 저혈당성 혼수	
	O24	임신중 당뇨병	

	O24.0	전에 있던 1형 당뇨병	
	O24.1	전에 있던 2형 당뇨병	
	O24.2	전에 있던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O24.3	상세불명의 전에 있던 당뇨병	
	O24.4	임신중 생긴 당뇨병	
	O24.9	상세불명의 임신중 당뇨병	
갑상선	D09.30	갑상선	
	D44.0	갑상선	
	D44.2	부갑상선	
	C7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5.0	부갑상선	
	E00-E07	갑상선의 장애	
	E20	부갑상선기능저하증	
	E21	부갑상선기능항진증 및 부갑상선의 기타 장애	
	E89.0	처치후 갑상선 기능저하증	
	E89.2	처치후 부갑상선 기능저하증	
	O90.5	분만 후 갑상선염	
고지혈증	E78.0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고지질혈증 A군)	
	E78.1	순수 고글리세라이드혈증(고지질혈증 B군)	
	E78.2	혼합성 고지질혈증(고지질혈증 C군)	
	E78.3	고카일로마이크론혈증(고지질혈증 D군)	
	E78.4	기타 고지질혈증	
	E78.5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첨부5. 중위소득 기준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단위: 원

### 1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148,000	147,280	105,944	148,789
3인	5,322,000	189,109	147,855	191,845
4인	6,482,000	230,142	196,236	233,952
5인	7,597,000	272,226	249,281	278,492
6인	8,674,000	309,670	293,801	320,126
7인	9,730,000	346,067	335,569	359,887
8인	10,785,000	403,785	402,840	434,962
9인	11,840,000	434,962	436,179	476,875
10인	12,896,000	476,875	481,248	521,613

### 2 기준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910,000	103,263	39,753	104,294
2인	4,839,000	173,332	128,505	175,359
3인	6,209,000	222,624	187,378	226,361
4인	7,562,000	272,226	249,281	278,492
5인	8,863,000	320,126	305,817	332,208
6인	10,120,000	359,887	354,030	379,133
7인	11,351,000	403,785	402,840	434,962
8인	12,582,000	476,875	481,248	521,613
9인	13,814,000	521,613	527,523	563,270
10인	15,045,000	563,270	570,140	625,329

**3** 기준중위소득 16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325,000	118,789	60,944	120,087
2인	5,530,000	197,299	157,523	200,343
3인	7,096,000	255,791	229,312	261,015
4인	8,642,000	309,670	293,801	320,126
5인	10,130,000	359,887	354,030	379,133
6인	11,565,000	434,962	436,179	476,875
7인	12,973,000	476,875	481,248	521,613
8인	14,380,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5,787,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7,194,000	625,329	628,210	729,187

**4** 기준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741,000	132,975	85,637	134,375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9인	17,760,000	729,187	717,192	934,511
10인	19,344,000	729,187	717,192	934,511

## 첨부6. 출생연도 기준표

연령	출생연도	연령	출생연도	연령	출생연도
만 1 세	2022년생	만 36세	1987년생	만 71세	1952년생
만 2 세	2021년생	만 37세	1986년생	만 72세	1951년생
만 3 세	2020년생	만 38세	1985년생	만 73세	1950년생
만 4 세	2019년생	만 39세	1984년생	만 74세	1949년생
만 5 세	2018년생	만 40세	1983년생	만 75세	1948년생
만 6 세	2017년생	만 41세	1982년생	만 76세	1947년생
만 7 세	2016년생	만 42세	1981년생	만 77세	1946년생
만 8 세	2015년생	만 43세	1980년생	만 78세	1945년생
만 9 세	2014년생	만 44세	1979년생	만 79세	1944년생
만 10세	2013년생	만 45세	1978년생	만 80세	1943년생
만 11세	2012년생	만 46세	1977년생	만 81세	1942년생
만 12세	2011년생	만 47세	1976년생	만 82세	1941년생
만 13세	2010년생	만 48세	1975년생	만 83세	1940년생
만 14세	2009년생	만 49세	1974년생	만 84세	1939년생
만 15세	2008년생	만 50세	1973년생	만 85세	1938년생
만 16세	2007년생	만 51세	1972년생	만 86세	1937년생
만 17세	2006년생	만 52세	1971년생	만 87세	1936년생
만 18세	2005년생	만 53세	1970년생	만 88세	1935년생
만 19세	2004년생	만 54세	1969년생	만 89세	1934년생
만 20세	2003년생	만 55세	1968년생	만 90세	1933년생
만 21세	2002년생	만 56세	1967년생	만 91세	1932년생
만 22세	2001년생	만 57세	1966년생	만 92세	1931년생
만 23세	2000년생	만 58세	1965년생	만 93세	1930년생
만 24세	1999년생	만 59세	1964년생	만 94세	1929년생
만 25세	1998년생	만 60세	1963년생	만 95세	1928년생
만 26세	1997년생	만 61세	1962년생	만 96세	1927년생
만 27세	1996년생	만 62세	1961년생	만 97세	1926년생
만 28세	1995년생	만 63세	1960년생	만 98세	1925년생
만 29세	1994년생	만 64세	1959년생	만 99세	1924년생
만 30세	1993년생	만 65세	1958년생	만 100세	1923년생
만 31세	1992년생	만 66세	1957년생	만 101세	1922년생
만 32세	1991년생	만 67세	1956년생	만 102세	1921년생
만 33세	1990년생	만 68세	1955년생	만 103세	1920년생
만 34세	1989년생	만 69세	1954년생	만 104세	1919년생
만 35세	1988년생	만 70세	1953년생	만 105세	1918년생

※ 상기 기준은 사업 종류가 매우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른 복지 사업 및 사회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음.

## 첨부7.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

검진시기		검사항목
1차	생후 14~35일	문진, 신체계측, 신체진찰, 건강교육 및 상담 / 발달평가 선별검사 없음
2차	생후 4~6개월	문진, 신체계측, 신체진찰, 건강교육 및 상담 / 발달평가 선별검사 없음
3차	생후 9~12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4차	생후 18~24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5차	생후 30~36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6차	생후 42~48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7차	생후 54~60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8차	생후 66~71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 첨부8. 다빈도 질문 및 답변

1	Q	바우처 대리 신청 가능 범위 및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
	A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법정후견인)만 가능.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을 필수로 지참해야 하며 서식 제1-1호 참고하여 작성 필수임.
2	Q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서울 소재 병원에서 부모보고, 전문가보고를 진행하였는데, 의사 진단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울산에서 병원 및 센터에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견서를 받아도 되는지?
	A	부모보고 및 전문가보고를 진행한 곳에서 진단서(소견서), 소견서 요약본을 받는 게 원칙이나, 불가 피할 경우 대체하여 진행 할 수 있음. (병원 또는 검사가능기관)
3	Q	가사지원서비스) 2022년에 비해 제공기관이 증가했는지?
	A	2022년 시범 실시 때에 비해 제공기관이 6개소에서 12개소로 증가했으며, 향후 제공기관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4	Q	가사지원서비스) 프리랜서, 일용직 등 4대보험 가입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신청이 불가능한지?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A	이 경우 12개월치 월급명세서, 4대보험 득실·납부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됨. 그 외에 재직 중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신청 가능함.
5	Q	가사지원서비스) 아버지는 임금근로자이고, 어머니는 알바 등 재직 관련 증빙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한지?
	A	재직 관련 자료를 증빙할 수 없는 경우는 맞벌이 가정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불가능 함.
6	Q	가사지원서비스) 임신부가 올해 삭제되었는데 어떻게 안내해드리면 되는지?
	A	22년도 선정자에 한해 신청은 가능하나, 사용 기간에 따라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음을 안내.
7	Q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 문의 올 때 어떻게 안내하면 되는지?
	A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및 안내책자 내용 안내.
8	Q	가사지원서비스) 22년 선정자이며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이월 가능한지?
	A	22년도에 남아있는 바우처 포인트는 소멸되며, 재이용을 원한다면 23년 재신청을 통한 선정이 되어야 이용할 수 있음.
9	Q	바우처를 이용하다 중도에 제공기관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몇 번까지 가능한지?
	A	변경 횟수 제한 없이 제공기관 변경 가능하며, 7일 전 제공기관 통보 필요함. 또한 사는 곳과 다른 타 구·군이더라도 제공기관 선택하여 이용 가능함.
10	Q	부모가 신청기간 동안 타지에 있어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학원 관계자 등 대리 신청 가능한지?
	A	신청권자 외 대리 신청은 불가능함.

11	Q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건보료가 조회된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A	건보료가 조회되더라도 소득 조사 없이 1등급 처리 가능함.
12	Q	신청권자 중 그 밖의 관계인에는 누가 해당하는지?
	A	그 밖의 관계인에는 법정후견인만 해당함.
13	Q	이용자가 선정이 된 후 타지역으로 전·출입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A	전·출입의 경우 별도의 처리 없이 대상 제외 완료 처리됨. 원칙상 기존 지역에서 생성된 바우처는 전출입 신고일 기준 해당월까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서비스 이용 자격 중지됨.
14	Q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어떤 경우에 소견서 요약본이 생략 가능한지?
	A	병원에서 의사가 실시할 경우 생략 가능. 병원에서 임상심리사가 검사를 실시하고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할 경우 소견서 요약본 생략 가능함.
15	Q	소득 조사) 보험료 합산 및 맞벌이 가구 소득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A	가구 내에 직장가입자 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해야 하며, 부부에 한해 맞벌이 가구인 경우 부부 중 낮은 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해야 함.
16	Q	재판정) 재판정 가능한 사업이 어떤 것이며, 몇 번까지 가능한지?
	A	기준정보 설명회 책자 p.6 2번 참고)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는 최대 5회,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나머지 사업은 최대 1회 가능함.
17	Q	수시접수) 수시접수 가능한 사업이 어떤 것이며, 몇 번까지 가능한지?
	A	기준정보 설명회 책자 p.6~7 참고) 해당 사업의 경우 매월 20~21일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됨. 생활영능기술지원서비스는 2, 5, 8, 10월 수시접수 가능하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경우 매월 가능함.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지원단으로 추천서를 보내주면 사례회의를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해 줌. 반드시 두 사업의 수시접수 신청 받을 때 지원단에서 발급한 확인서 및 신청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함.
18	Q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심화검사 결과지를 제출할 경우 우선순위가 되는데 이 심화검사는 무엇인지?
	A	영유아건강검진 결과상 심화평가권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 부모의 선택으로 심화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임. 심화검사는 일반 치료센터가 아닌 상급 병원에서 실시한 경우만 인정함. 심화검사에는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 CARS(카스, 자폐검사), 맥아더베이트츠(언어발달검사) 등이 있음.
19	Q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심리평가보고서가 소견서로 같음이 되는지?
	A	부모보고 검사 결과지, 전문가보고 검사 결과지가 첨부된 심리평가보고서는 소견서로 같음 가능함.
20	Q	소득조사) 행복이음으로 소득조회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A	신청자에게 건강보험증을 요청할 수 있음. 그 외 건강보험료 영수증,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 등을 토대로 신청월 12개월 평균하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산정하면 됨.
21	Q	서비스 신청 몇 개까지 가능한지?
	A	이용자는 중복 신청 불가 사업 외에 서비스 2개까지 신청 가능함.

22	Q	사랑나눔안마서비스)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이 있는 자의 경우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에 하나를 제출하면 되는데 해당 서류만 가능한지?
	A	질병분류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네 개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자의 사정 상 해당 서류를 구비할 수 없지만 제출한 서류에서 질병분류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면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 있음.
23	Q	직업능력발달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 가능한지?
	A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 중이라도 중복 가능함.
24	Q	생활영농기술지원서비스) 신청 기간이 언제인지?
	A	2, 5, 8, 10월 분기별 수시 접수 가능한 사업이므로, 2월 20 ~ 21일 또한 접수 기간을 놓친 이용자가 있다면 신청 가능함.
25	Q	성인심리지원서비스) 다른 사업의 경우 서류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업 서류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A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신청 서류의 유효기간은 모두 6개월 이내임.
26	Q	사랑나눔안마서비스) 재판정 신청 시 신청 자격 동일한지?
	A	사랑나눔안마서비스의 경우 신규 신청 시와 동일한 선정 기준으로 제출 서류를 구비하면 되고 이외 재판정이 가능한 다른 사업 또한 선정 기준에 맞는 자격과 서류를 갖추어야 함.
27	Q	사랑나눔안마서비스)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인 경우 질병분류코드가 정해져 있는데 책자 외 유사한 질병의 분류 코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소분류 사이 숫자의 질병 분류 코드는 모두 해당하며, 뒤에 소수점 모두 해당함. 그 외에 의문이 가는 질병 분류 코드의 경우 KOICD 질병 분류 정보 센터 홈페이지 참고 또는 지원단과 논의 필요함.
28	Q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신청 자격은 무엇인지?
	A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또는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임.
29	Q	직업능력발달서비스) 경력단절 또는 구직활동 중인 자의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A	경력단절인 경우 4대 보험 중 1개 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구직활동 중인 자는 워크넷 등의 구직활동 증명서를 제출하면 됨.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서류를 제출해야 됨.



## **부 록 - 서비스 신청 관련 서식**

# [제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2.1.1>

(3쪽 중 1쪽)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 14일  
(첫만남이용권,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는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 배우자 관계 (  법률혼  사실혼  사실상 이혼 )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	----	-------	------	-----

제출처		사회보장급여 내용					
국민 민선 주민 센터	[ ]보육료지원 ·유아학비지원 * 영아수당(보육료) 지원 포함	지원대상자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0~2세) 기본(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0~2세) 연장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방과후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3~5세)(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장애아 보육료(6~12세)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유아학비(3~5세)( <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0~2세) 기본(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0~2세) 연장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방과후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3~5세)(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장애아 보육료(6~12세)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유아학비(3~5세)( <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0~2세) 기본(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0~2세) 연장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방과후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3~5세)(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장애아 보육료(6~12세)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유아학비(3~5세)( <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자격을 신청한 경우라도,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0~2세)기본보육 자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만 0~1세 아동은 영아수당(보육료) 자격으로, 어린이집(0~2세)로 신청하면 됩니다.						
	[ ]가사간병방문지원	지원대상자					서비스시간
		신청요건(1개 선택)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중증질환자 <input type="checkbox"/> 희귀난치성질환자 <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녀가정 <input type="checkbox"/> 월 24시간 <input type="checkbox"/> 조손가정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input type="checkbox"/>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input type="checkbox"/> 월 27시간 <input type="checkbox"/>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input type="checkbox"/> 월 40시간						
	[ ]장애아동 가족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대상자	장애유형	[ ] 뇌병변장애 [ ] 청각장애 [ ] 시각장애 [ ] 언어장애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 ] 미등록 (영유아)		
			장애정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미등록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input type="checkbox"/> 언어재활 <input type="checkbox"/> 청능재활 <input type="checkbox"/> 미술심리재활 <input type="checkbox"/> 음악재활 <input type="checkbox"/> 행동재활 <input type="checkbox"/> 놀이심리재활 <input type="checkbox"/> 재활심리 <input type="checkbox"/> 감각발달재활 <input type="checkbox"/> 운동발달재활 <input type="checkbox"/> 심리운동 <input type="checkbox"/> 기타( )					
언어발달 지원 (비장애아동)		지원대상자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 언어발달진단 [ ] 언어재활 [ ] 기타 ( )					
		장애유형 (부모 또는 조부모)	<input type="checkbox"/> 뇌병변장애 <input type="checkbox"/> 청각장애 <input type="checkbox"/> 시각장애 <input type="checkbox"/> 언어장애 <input type="checkbox"/> 지적장애 <input type="checkbox"/> 자폐성장애				
[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지원대상자	자녀와의 관계			[ ] 부 [ ] 모 [ ] 기타( )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유형	<input type="checkbox"/> 지적장애 <input type="checkbox"/> 자폐성장애 <input type="checkbox"/> 자폐성장애 (영유아)		장애 정도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 지원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유형	<input type="checkbox"/> 지적장애 <input type="checkbox"/> 자폐성장애		장애 정도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원유형	<input type="checkbox"/> 주간활동서비스 ( <input type="checkbox"/> 단축형 <input type="checkbox"/> 기본형 <input type="checkbox"/> 확장형 ) * 기본형/확장형 이용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차감됩니다. <input type="checkbox"/> 방과후활동서비스				
[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	지원대상자			지원신청	청소년본인 또는 부모, 주양육자 신청가능		
	지원대상자						

	[ ]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자				
		긴급활동지원	[ ] 해당 (※ 신규신청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활동지원급여	신청유형	[ ] 신규신청 [ ] 변경신청 [ ] 갱신신청 [ ] 노인장기요양전환자 지원		
			변경신청 사유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 ] 장애상태의 변화	[ ] 학교생활	
				[ ] 직장생활	[ ] 취약가구	
	[ ] 독거(1인)가구 (19세 이상)			[ ] 거주지 이전		
	[ ] 나머지 가족의 사회생활	[ ] 조손가정 (19세 미만)				
	특별지원급여	[ ] 출산 [ ] 자립준비 [ ] 보호자일시부재([ ] 결혼 [ ] 사망 [ ] 출산 [ ] 입원 [ ] 지역사회보호자)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 ]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자	출생정보 [ ] 국외출생 [ ] 복수국적			
		지급방식	[ ] 바우처(원칙) [ ] 현금(시설보호 아동일 경우) [ ] 지역화폐(조례로 정하는 경우)			
카드정보 (국민행복카드)		보호자(카드 보유자)				
		[ ] BC( ) 은행) [ ] 삼성 [ ] 롯데 [ ] KB국민 [ ] 신한				
* 유의사항 - 신규신청자의 경우, 발급 희망 카드사 및 회원 은행사(BC카드를 선택한 경우)를 선택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카드를 선택합니다.						
보 건 소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원대상자	출산(예정)일      년      월      일			
		지원 유형	[ ] 단태아([ ] 첫째아 [ ] 둘째아 [ ] 셋째아 이상), [ ] 쌍생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단태아([ ] 인력1명 [ ] 인력2명) [ ] 삼태아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다태아			
		신청요건	기본 지원대상	[ ] 자격확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 ] 소득기준 이하		
			예외 지원 대상 (해당자만)	[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 장애인 산모 및 장애인 신생아 [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 새터민 산모 [ ] 결혼이민 가정 [ ] 미혼모 산모 [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 분만 취약지 산모 [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서비스 제공 장소	[ ] 자택 [ ] 기타			
보건소 · 주민 센터	[ ] 저소득층기저귀 교체분유지원	지원대상자				
		지원 유형 (중복 체크 가능, 조제분유는 변경 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 가능)	기본지원대상	[ ] 기저귀([ ] 국기초 [ ] 차상위 [ ] 한부모 [ ] 기타) [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질병 [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 기타)		
			예외지원대상 (지자체 자체 사업)	[ ] 기저귀([ ] 국기초 [ ] 차상위 [ ] 한부모 [ ] 기타) [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질병 [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 기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인 (√ 체크)
<p><b>1. 개인정보 활용 목적</b>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p> <p><b>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b>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보육료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우·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b>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b>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b>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b></p> <p><b>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b>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b>5년간 보유</b>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b>파기함을 고지합니다.</b></p>		[ ]

유의 사항		확인 (√ 체크)
<p>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b>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b>,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b>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b></p>		[ ]
<p>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p>		[ ]
<p>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b>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b>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b>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b>을 받을 수 있습니다.</p>		[ ]
<p>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p>		[ ]

추가제출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li> <li>3.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장보육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해당자에 한함)</li> <li>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li> <li>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한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li> <li>6. 첫만남이용권 지원신청 시 시설입소아동, 복수국적자, 난민 인정자, 보호자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 및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격확인 가능한 서류</li> </ol>
------------	--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활용동의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  
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4호]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이용자용)

국민행복카드 소개 및 발급 안내 (서비스 이용자용)

☑ 「국민행복카드」란?

-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카드

☞ 전자이용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다만, 희망e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향후 전자이용권 재발급 신청시까지 희망e카드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가까운 은행, 우체국 등 직원에게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요청하세요

☞ 대상자가 만14-19세미만인 경우,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 카드사별로 신청 가능자(법정대리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과 본인 동행 등), 구비서류 필요여부 등이 다르므로 영업점 방문 전 발급 기준을 문의하세요

☞ 대상자가 만19세이상인 경우,

①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②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때 카드사 콜센터 발급상담 전화를 함께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문의 및 정보확인

- (전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 1566-3232(단축4번)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인터넷)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www.voucher.go.kr)

# [제5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8.1.1.)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발급 대상자	대상자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① 징구 ② 미징구 ※ 만14세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신청 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재발급	재발급사유	<input type="checkbox"/> 분실 <input type="checkbox"/> 훼손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카드 수령지	수령인	<input type="checkbox"/> 발급대상자 <input type="checkbox"/> 보호자(가족 등)	대상자와의 관계 : ※ 수령자가 보호자인 경우 기재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수령지	① 자택 ② 직장 ③ 읍·면·동주민센터 ※ 자택, 직장, 읍·면·동주민센터 중 희망 수령지를 체크하고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		
	자택	□□□□□	전화번호	-
	직장	□□□□□	전화번호	

본인 부담금 환급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대상사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방문·주간보호·단기가사),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 안내 및 유의사항

- ▶ 신청대상 : 만14세미만 아동, 만75세이상 노인, 노인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 지역사회서비스 대상자 중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노인 돌봄여행, 치매환자 가족여행

-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 서비스 대상자(본인) 명의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 이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6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적대리인 동의서**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6.11.30.)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카드발급 신청인 (지원대상자)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법정대리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연락처	-

상기 본인(법정대리인)은 카드 발급 신청인을 대리하여 국민행복카드의 발급 및 동 카드의 사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인이 만14세미만 아동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카드 발급 신청인란에 국민행복카드 발급 대상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제7호]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00년 00월 00일 신청하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000000사업)이용 시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동 사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 1.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 전자카드 포함)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에게 판매 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안된다.
- 2.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때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물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 2. 회당결제 방식(예외,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자살위험군예방서비스, 저소득 건강관리서비스)에 따라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당일 반드시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바우처카드 미소지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3. 본인부담금의 미납 및 2개월간 바우처 결제실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격이 상실됩니다.
- 4. 아울러 제공인력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부당한 해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자격이 상실되고, 관련법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0000서비스) 신청인(또는 대리인) ( )는 위의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안내 받았으며 동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Beck 우울 척도 (Beck Depression Inventory : BDI)

대상	청소년 / 성인	대상사업	실버 심리지원 지원서비스
척도 내용	<p>■ 우울증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신체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는 21문항으로 구성</p>		
실시방법	<p>자기보고식. 자신의 상태를 4개 문장 중 하나에 표시하도록 함.</p>		
채점방법	<p>1) (1)번 = 0점, (2)번 = 1점, (3)번 = 2점, (4)번 = 3점으로 채점. 2) 각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함.</p>		
해석지침	<p>1) 점수의 범위 : 0 - 63점                  * 0 - 9점 : 우울하지 않은 상태                  * 10 - 15점 : 가벼운 우울 상태                  * 16 - 23점 : 중한 우울 상태                  * 24 - 63점 : 심한 우울 상태                  ※ 19번 아래 질문에 '체중 조절 중'으로 대답하면 19번 문항은 0점 처리                  ※ <u>울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총점 16점 이상인 경우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u></p>		
척도가 사용된 국내연구	<p>* 김영미(1998). 우울성 성격장애 진단의 임상적 타당성 및 유용성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p>		

## Beck 우울 척도 (Beck Depression Inventory : BDI)

이름 : \_\_\_\_\_ 연령 : \_\_\_\_\_세 성별 : 남 / 여 작성일 : \_\_\_\_\_년 \_\_\_\_\_월 \_\_\_\_\_일

각 문항들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지난 한 주 동안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문장을 선택하여 그 번호에 ○표시 하여 주세요.

번호	질 문	점수
1	1) 나는 슬프지 않다.	0
	2) 나는 슬프다.	1
	3) 나는 항상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다.	2
	4)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3
2	1) 나는 앞날에 대해서 별로 낙심하지 않는다.	0
	2) 나는 앞날에 대해서 용기가 나지 않는다.	1
	3)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느낀다.	2
	4) 나의 앞날은 아주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3
3	1)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0
	2) 나는 보통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1
	3) 내가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보면, 실패투성이인 것 같다.	2
	4) 나는 인간으로 완전한 실패자라고 느낀다.	3
4	1) 나는 전과같이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0
	2) 나의 일상생활은 예전처럼 즐겁지 않다.	1
	3) 나는 요즘에는 어떤 것에서도 별로 만족을 얻지 못한다.	2
	4) 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싫증난다.	3
5	1)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0
	2)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	1
	3)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아주 많다.	2
	4) 나는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3
6	1) 나는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0
	2) 나는 어쩌면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	1
	3) 나는 벌을 받을 것 같다.	2
	4)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3
7	1)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0
	2)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	1
	3) 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2
	4) 나는 나 자신을 증오했다	3
8	1)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지는 않다.	0
	2)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 나 자신을 탓하는 편이다.	1
	3)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언제나 나를 탓한다.	2
	4)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다 내 탓이다.	3
9	1) 나는 자살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0
	2) 나는 자살할 생각을 가끔 하지만, 실제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1
	3)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2
	4)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3
10	1) 나는 평소보다 더 울지는 않는다.	0
	2) 나는 전보다 더 많이 운다.	1
	3) 나는 요즘 항상 운다.	2
	4) 나는 전에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었지만, 요즘은 울래야 울 기력조차 없다.	3

11	1) 나는 요즈음 평소보다 더 짜증을 내는 편은 아니다.	0
	2) 나는 전보다 더 쉽게 짜증이 나고 귀찮아진다.	1
	3) 나는 요즈음 항상 짜증을 내고 있다.	2
	4) 전에는 짜증스럽던 일에 요즘은 너무 지쳐서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3
12	1)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있다.	0
	2) 나는 전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1
	3)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졌다.	2
	4)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없어졌다.	3
13	1) 나는 평소처럼 결정을 잘 내린다.	0
	2) 나는 결정을 미루는 때가 전보다 더 많다.	1
	3) 나는 전에 비해 결정 내리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2
	4) 나는 더 이상 아무 결정도 내릴 수가 없다.	3
14	1) 나는 전보다 내 모습이 더 나빠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0
	2) 나는 나이들어 보이거나 매력없어 보일까봐 걱정한다.	1
	3) 나는 내 모습이 매력없게 변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2
	4) 나는 내가 추하게 보인다고 믿는다.	3
15	1) 나는 전처럼 일을 할 수 있다.	0
	2)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에 전보다 더 많은 노력이 든다.	1
	3) 무슨 일이든 하려면 나 자신을 매우 심하게 채찍질해야만 한다.	2
	4) 나는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3
16	1) 나는 평소처럼 잠을 잘 수가 없다.	0
	2) 나는 전에 만큼 잠을 자지는 못한다.	1
	3) 나는 전보다 한 두시간 일찍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	2
	4) 나는 평소보다 몇 시간이나 일찍 깨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 수 없다.	3
17	1) 나는 평소보다 더 피곤하지는 않다.	0
	2) 나는 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진다.	1
	3) 나는 무엇을 해도 피곤해진다.	2
	4)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3
18	1) 내 식욕은 평소와 다름없다.	0
	2) 나는 요즈음 전보다 식욕이 좋지 않다.	1
	3) 나는 요즈음 식욕이 많이 떨어졌다.	2
	4) 요즈음에는 전혀 식욕이 없다.	3
19	1) 요즈음 체중이 별로 줄지 않았다.	0
	2) 전보다 몸무게가 2Kg 가량 줄었다.	1
	3) 전보다 몸무게가 5Kg 가량 줄었다.	2
	4) 전보다 몸무게가 7Kg 가량 줄었다.	3
	5) 나는 현재 음식 조절로 체중을 줄이고 있는 중이다.	예 아니요
20	1) 나는 건강에 대해 전보다 더 염려하고 있지는 않다.	0
	2) 나는 여러 가지 통증, 소화불량, 변비 등과 같은 신체적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	1
	3) 나는 건강이 염려되어 다른 일은 생각하기 힘들다.	2
	4) 나는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 다른 일은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다.	3
21	1) 나는 요즈음 성(sex)에 대한 관심에 별다른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0
	2) 나는 전보다 성(sex)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1
	3) 나는 전보다 성(sex)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었다.	2
	4) 나는 성(sex)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다.	3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Korean Perceived Stress Scale : PSS-K)

대상사업	실버 심리지원 지원서비스
척도 내용	* 최근 한 달간 전반적으로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 측정
실시방법	자기보고식. 5점 Likert 척도
채점방법	1) '전혀없었다'=0점 ~ '매우 자주 있었다'=4점으로 채점 2) 각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함. 3) 역채점 문항: 4,5,7,8번 문항
해석지침	1) 점수의 범위 : 0 - 40점 * 0 - 13점 : 정상 * 14점 이상 : 스트레스 위험군 <b>※ 울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총점 14점 이상인 경우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b>
척도가 사용된 국내연구	* 백영묘(2010). 지각된 스트레스:척도 표준화 및 기억 기능에 대한 영향 탐색.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Korean Perceived Stress Scale : PSS-K)

이름 : \_\_\_\_\_ 연령 : \_\_\_\_\_ 세    성별 : 남 / 여    작성일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다음 문항들은 지난 한 달 동안의 당신의 감정과 생각에 관하여 물어보는 것입니다.  
 각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고, 얼마나 자주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표시 하여주십시오.

번호	질문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
1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화가 났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삶에서 중요한 일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3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 모두에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7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안감과 초조함을 통제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8	어떤 일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화가 났다.	①	②	③	④	⑤
10	힘든 일이 너무 쌓여서 극복할 수 없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 Beck의 자살생각 척도(SSI)

척도명	Beck의 자살생각 척도(SSI)	대상	청소년/성인
척도소개	* 자살 시도 전 자살에 대한 생각의 심각성을 측정		
채점방법 및 해석	1) 3점 척도, 총 19문항으로 구성 2) 자살 생각의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38점 3) 평가기준 * 3점 이하: 자살에 대한 충동이나 생각이 거의 없음 * 4~16점: 자살에 대한 생각이 보통 * 17점 이상: 자살에 대한 생각이 심각 ※ 문항 11, 13, 19번 a, b는 위험도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0a, 0b는 동일하게 0점 / 2a, 2b는 동일하게 2점으로 채점 ※ <u>울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총점 17점 이상인 경우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u>		
척도가 사용된 국내연구	■ 김현순·김병석(2008). 노인과 청소년의 자살 생각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 28(2), 325-343. ■ 정호영·노승현(2007). 노인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우울과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7(4), 789-805.		

\* 출처: 대전·충남·충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201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측정을 위한 척도활용 가이드북

## Beck의 자살생각 척도(SSI)

이용자		총점		검사일		검사자	
-----	--	----	--	-----	--	-----	--

※ 이 질문지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각 문항들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문항의 해당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 살고 싶은 소망은? (     )
  0. 보통 혹은 많이 있다.
  1. 약간 있다.
  2. 전혀 없다.
  
2. 죽고 싶은 소망은? (     )
  0. 전혀 없다.
  1. 약간 있다.
  2. 보통 혹은 많이 있다.
  
3. 살고 싶은 이유 / 죽고 싶은 이유는? (     )
  0. 사는 것이 죽는 것 보다 낫기 때문에
  1.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2.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4.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하려는 욕구가 있는가? (     )
  0. 전혀 없다.
  1. 약간 있다.
  2. 보통 혹은 많이 있다.
  
5. 별로 적극적이지 않고 수동적인 자살 욕구가 생길 때는? (     )
  0. 생명을 건지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미리 할 것이다.
  1. 삶과 죽음을 운명에 맡기겠다.
  2. 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
  
6.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나 소망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가? (     )
  0. 잠깐 그런 생각이 들다가 곧 사라진다.
  1. 한동안 그런 생각이 계속된다.
  2. 계속, 거의 항상 그런 생각이 지속된다.
  
7. 얼마나 자주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드나? (     )
  0. 거의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1.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
  2. 그런 생각이 계속 지속된다.
  
8. 자살 생각이나 소망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     )
  0.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양가적이나 크게 개의치 않는다.
  2. 그런 생각을 받아들인다.
  
9.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가? (     )
  0.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1. 통제 할 수 있을지 확신 할 수 없다.
  2. 전혀 통제할 수 없을 것 같다.

10.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한 방해물이 있다면? ( )

(예: 가족, 종교, 다시 살 수 없다는 생각 등)

- 0. 방해물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 1. 방해물 때문에 조금은 마음이 쓰인다.
- 2. 방해물에 개의치 않는다.

11. 자살에 대해 깊게 생각 해 본 이유는? ( )

- 0a.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0b.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 관심을 끌거나 보복하기 위해서
- 1.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보복하거나, 현실 도피의 방법으로
- 2. 현실 도피적인 문제해결 방법으로

12. 자살에 대해 깊게 생각 했을 때 구체적인 방법까지 계획 했는가? ( )

- 0.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1. 자살 생각을 했으나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 2.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하고 치밀하게 생각해 놓았다.

13. 자살 방법을 깊게 생각 했다면 그것에 얼마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또한 시도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나?( )

- 0. 방법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고, 기회도 없을 것이다.
- 1. 방법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 2a. 생각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며, 기회도 있을 것이다.
- 2b. 앞으로 기회나 방법이 생길 것 같다.

14. 실제로 자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 )

- 0. 용기가 없고 너무 약하고 두렵고 능력이 없어서 자살 할 수 없다.
- 1. 자살 할 용기와 능력이 있는 지 확신 할 수 없다.
- 2. 자살 할 용기와 자신이 있다.

15. 정말로 자살 시도를 할 것이라고 확신하나? ( )

- 0. 전혀 그렇지 않다.
- 1. 잘 모르겠다.
- 2. 그렇다.

16. 자살에 대한 생각을 실행하기 위해 실제로 준비한 것이 있나? ( )

- 0. 없다.
- 1. 부분적으로 했다(예: 약을 사 모으기 시작함).
- 2. 완전하게 준비했다(예: 약을 사 모았다).

17. 자살하려는 글(유서)을 쓴 적이 있는가? ( )

- 0. 없다.
- 1. 쓰기 시작했으나 다 쓰지 못했다 : 단지 쓰려고 생각했다.
- 2. 다 써 놓았다.

18. 죽음을 예상하고 마지막으로 한 일은? ( ) (예 : 보험, 유언 등)

- 0. 없다.
- 1. 생각만 해 보았거나, 약간의 정리를 했다.
- 2. 확실한 계획을 세웠거나 다 정리를 해 놓았다.

19. 자살에 대한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속이거나 숨겼습니까? ( )

- 0a.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0b. 다른 사람에게 터놓고 이야기 하였다.
- 1.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다가 숨겼다.
- 2. 그런 생각을 속이고, 숨겼다.

[어르신생기발랄] 노인우울척도 한국형(GDS-K)

척도명	노인 우울 척도 한국형 (GDS-k)	대상	노인
척도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들의 우울측정을 위해 사고, 정서, 인지, 신체, 사회적 측면을 골고루 반영</li> <li>■ 긍정적 문항(14개)와 부정적 문항(16개)으로 구성</li> </ul>		
채점방법 및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분척도, 총 30문항으로 구성되며, “예”라고 반응한 것에 1점을 부과하여 합산</li> <li>■ 문항구성</li> </ul>		
	하위척도	문항수	문항 번호
	정서적 불편감	7	1,2,3,5,17,23,25
	비관적 사고 및 불행감	6	6*,7*,10*,15*,21*,22*
	신체적 약화 및 건강염려증가	8	8*,12*,18,26,27,28,29,30*
	인지기능 저하	6	9*,11*,14,16*,20*,24
	사회적 철수 및 활동감소	3	4,13*,19
(*은 역채점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18점 : 경계선 수준 및 경도의 우울증</li> <li>- 19~21점 : 중등도의 우울증</li> <li>- 22점 이상 : 심도의 우울증</li> </ul> </li> <li>■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해석</li> </ul>			
척도가 사용된 국내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은영(2006). 재가노인의 우울 감소를 위한 계슈탈트 집단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li> </ul>		

\* 출처: 대전·충남·충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201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측정을 위한 척도활용 가이드북

이용자		총점		검사일		검사자	
-----	--	----	--	-----	--	-----	--

	항 목	예	아니오
1	쓸데없는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 괴롭다.	1	0
2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무기력하게 느껴진다.	1	0
3	안절부절못하고 초조할 때가 자주 있다.	1	0
4	밖에 나가기보다는 주로 집에 있으려 한다.	1	0
5	앞날에 대해 걱정할 때가 많다.	1	0
6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참 기쁘다.	1	0
7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1	0
8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난다.	1	0
9	예전처럼 정신이 맑다	1	0
10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는 일이 별로 없다.	1	0
11	내 판단력은 여전히 좋다	1	0
12	내 나이의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건강하다.	1	0
13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1	0
14	정말 자신이 없다.	1	0
15	즐겁고 행복하다.	1	0
16	내 기억력은 괜찮은 것 같다.	1	0
17	지쳐버리거나 앓을까 걱정된다.	1	0
18	별일 없이 얼굴이 화끈거리고 진땀이 날 때가 있다.	1	0
19	농담을 들어도 재미가 없다.	1	0
20	예전에 좋아하던 일들을 여전히 즐긴다.	1	0
21	기분이 좋은 편이다.	1	0
22	앞날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낀다.	1	0
23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느낀다.	1	0
24	나의 잘못에 대하여 항상 나 자신을 탓한다.	1	0
25	전부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가 많다.	1	0
26	전보다 내모습(용모)이 추해졌다고 생각한다.	1	0
27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예전보다 힘이 많이 든다.	1	0
28	무슨 일을 하든지 곧 피곤해진다.	1	0
29	요즈음 몸무게가 많이 줄었다.	1	0
30	이성에 대해 여전히 관심이 있다.	1	0

[어르신생기발랄] 한국형 단축 노인 우울척도(GDSSF-K)

척도명	한국형 단축 노인 우울척도 (GDSSF-K)	대상	노인
척도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에 맞게 수정된 한국형 단축 노인 우울척도</li> </ul>		
채점방법 및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15문항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활력요인(10문항) : 1,3,4,5,6,9,10,13,14,15번 문항은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 우울한 것으로 채점</li> <li>- 우울요인(5문항) : 2,7,8,11,12번 문항은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 우울한 것으로 채점</li> </ul> </li> <li>■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점 이하: 정상</li> <li>- 6~10점: 경증 우울</li> <li>- 11~15점: 중증 우울</li> </ul> </li> </ul>		
척도가 사용된 국내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진주(2010). 의료복지시설 거주노인의 우울·무력감과 생활만족에 음악활동이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li> <li>■ 기백석(1996). 한국판 노인 우울 척도 단축형의 표준화 예비연구. 신경정신의학, 35(2), 298-307.</li> </ul>		

이용자	총점	검사일	검사자

번호	지난 한 주 동안의 느낌	예	아니오
1	평소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⓪	①
*2	활동과 흥미가 많이 저하되었습니까?	⓪	①
3	앞날에 대해서 희망적입니까?	⓪	①
4	대부분의 시간을 맑은 정신으로 지내십니까?	⓪	①
5	대부분의 시간을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⓪	①
6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⓪	①
*7	가끔 낙담하고 우울하다고 느끼십니까?	⓪	①
*8	지금 자신의 인생이 매우 가치 없다고 느끼십니까?	⓪	①
9	인생이 매우 흥미롭다고 느끼십니까?	⓪	①
10	활력이 충분하다고 느끼십니까?	⓪	①
*11	자주 사소한 일에 마음의 동요를 느끼십니까?	⓪	①
*12	자주 울고 싶다고 느끼십니까?	⓪	①
13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⓪	①
14	결정을 내리는 것이 수월하십니까?	⓪	①
15	마음은 이전처럼 편안하십니까?	⓪	①

**[어르신생기발랄] 치매선별검사(MMSE-DS)**

기관명		검사일자	
이용자		검사자	
<p>평가자의 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피검자가 스트레스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격려</li> <li><input type="checkbox"/> 피검자가 과제를 잘 마치지 못할 경우 적절히 위로</li> <li><input type="checkbox"/> 피검자가 과제를 잘 해나갈 경우 긍정적인 피드백</li> <li><input type="checkbox"/> 답이 맞았는지 여부를 알려주어서는 안됨</li> <li><input type="checkbox"/> “좋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등의 말은 가능</li> <li><input type="checkbox"/> 채점된 점수는 피검자가 볼 수 없도록</li> <li><input type="checkbox"/> 시행 지침을 반드시 준수</li> <li><input type="checkbox"/> 연령, 성별, 학력을 꼭 파악 (정상기준 이용한 신뢰로운 해석)</li> <li><input type="checkbox"/> 피검자의 반응은 반드시 그대로 기록 (채점이나 시행 오류를 교정)</li> </ul> <p>총점 24점 이하일 경우 치매 가능성이 높은 군으로 판단</p>			

**치매선별검사 (MMSE-DS ; Korean version of MMSE for Dementia Screening)**

번호	질문내용	틀림	맞음
1.	올해는 몇 년도 입니까?	0	1
2.	지금은 무슨 계절입니까?	0	1
3.	오늘은 몇 월입니까?	0	1
4.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0	1
5.	지금은 몇 일입니까?	0	1
6.	우리가 있는 이곳은 무슨 도/특별시/광역시입니까?	0	1
7.	여기는 무슨 시/군/구입니까?	0	1
8.	여기는 무슨 구/동/읍/면입니까?	0	1
9.	우리는 지금 이 건물의 몇 층에 있습니까?	0	1
10.	이 장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0	1
11.	제가 세 가지 물건의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다 들으신 다음에 세 가지 물건의 이름을 모두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몇 분 후에는 그 세 가지 물건의 이름들을 다시 물어볼 것이니 들으신 물건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나무, 자동차, 모자		
	이제 000님께서 방금 들으신 3가지 물건 이름을 모두 말씀해 보세요.		
	나무	0	1
	자동차	0	1
	모자	0	1

번호	질문내용	틀림	맞음
12.	100에서 7일 빼면 얼마가 됩니까?	0	1
	거기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0	1
	거기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0	1
	거기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0	1
	거기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0	1
13.	조금 전에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세 가지 물건의 이름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무	0	1
	자동차	0	1
	모자	0	1
14.	(실제 시계를 보여주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0	1
	(실제 연필을 보여주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0	1
15.	제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듣고 따라해 보십시오. 한 번만 말씀드릴 것이니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간장공장공장장	0	1
16.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해 보십시오. 한 번만 말씀드릴 것이니 잘 들으시고 그대로 해 보십시오.		
	제가 종이를 한 장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종이를 오른손으로 받아, 반으로 접은 다음, 무릎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오른손으로 받는다.	0	1
	반으로 접는다.	0	1
	무릎 위에 놓는다.	0	1
17.	(겹친 오각형 그림을 가리키며) 여기에 오각형이 겹쳐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아래 빈 곳에 그대로 그려보십시오. 	0	1
18.	웃은 왜 빨아서 입습니까?	0	1
19.	“티끌 모아 태산”은 무슨 뜻 입니까?	0	1
	총 점		/30

M E M O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6길 8-18, 3층**  
**Tel) 052-243-4800 / fax) 052-243-4801**  
**Homepage) <http://www.ussag.or.kr/>**